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기관 업무처리 규칙

제 정 2026. 6.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제10조의8,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각 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이하 “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지역과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이라 함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3. “인증규칙”이라 함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인증고시”이라 함 「인증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면적이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2항,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개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7. “주무부처”라 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8. “인증기관”이라 함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지정한 인증업무 수행기관을 말한다.
9. “소유자등”이라 함은 개별시설의 소유자·관리자·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10. “예비인증”이라 함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에 하는 인증을 말한다.
11. “본인증”이라 함은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는 인증을 말한다.
12. “신청일”이라 함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공문서로 인증기관에 제출한 날로 본다.
13. “접수일”이라 함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 본다.
14. “산정일수”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한다.
15. “인증심의 의결 기준”이라 함은 제 14조에 따른 인증 심의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의결 기준을 말한다.
16. “인증등급”이라 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을 말하며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나뉜다.
17. “일반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규칙 제2조에 따른 개별시설과 지역인증이 가능한 인증기관을 말한다.
18. “전문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규칙 제2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일부 개별시설의 인증만 가능한 인증기관을 말한다.

- 제3조(업무범위)** ① 이 규칙은 인증기관이 주무부처장관으로부터 인증규칙에 따라 받은 인증업무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② 인증기관의 인증제도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증 대상 및 심사 기준

제4조(인증 대상 및 종류)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② 인증의 종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1. 예비인증

2. 본인증

가. 교통수단을 제외한 개별시설(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도로) :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는 인증

나. 교통수단 : 등록 또는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에 하는 인증

다. 지역 : 공사 등의 완료 후에 하는 인증

제5조(인증 기준 및 절차)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은 인증고시 제5조를 따른다.

②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인증절차는 업무처리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른다.

제 3 장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전문인력 위촉)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전문인력은 인증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전문인력은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이 공개모집하여 각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인증운영기관의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인력의 자격조건을 별도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인증심사단 구성·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인증 대상별로 인증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되, 심사단은 제6조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이 위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전문인력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 서류에 대한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검토·확인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공무원이거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인증기관이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사람

④ 심사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 기간 동안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심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심사단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간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인증심사에는 반드시 인증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1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전을 심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심의를 위하여 인증 대상별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전문인력 중 인증규칙 별표 3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 결과서의 조치 내용에 대한 검증
2.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속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

⑤ 인증심의위원회에는 반드시 인증 대상별 장애인당사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인증심의위원회에는 인증 대상의 규모나 심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인증기관에 소속된 인증심의위원 1인 내지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인증여부 및 인증 등급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심의위원회 선정 시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⑩ 인증기관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 안건 등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배포 할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단 및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심사단 및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단 및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심사, 심의 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임원 포함)가 되거나, 그 심사, 심의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단 및 심의위원이 그 심사, 심의 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신청인은 심사단 및 심의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심사단 및 심의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단 및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심사단 및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⑤ 인증 심사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 후 위의 각 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 7호 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증 절차 및 통보

제10조(인증심사의 절차) 인증심사의 절차는 본 규칙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인증 신청서 제출) ①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고시 제2조에 따라 작성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이하 “자체평가서” 라고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도서는 건축, 조경, 토목 등 항목별 도서)를 제출한다.
 3.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에 관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은 인증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이 할 수

있으며 소유자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이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신청 전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은 이에 대해 응대하여 인증 기준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12조(인증 신청서 검토) ①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인증 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자체평가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3.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인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자등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단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7조에 의해 선정된 심사단에 개최 3일전까지 서류 등을 송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단은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본인증에 한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예비인증은 증축·개축·재축 등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단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등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 관계자(건축사 등)로 하여금 심사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단은 심사 이후에 심사내용, 심사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표(항목)가 있는

경우 인증등급(지표별 점수)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통보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단의 심사의견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은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유자 등은 인증심사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인증이나 사후관리 시 다음 각 호와 따라 예비인증과 다른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2. 예비인증 당시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예비인증 이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 등) ① 인증기관은 제13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제8조에 의해 선정된 심의위원회에 개최 3일전까지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여 인증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대상에 대한 의결을 한다.

1. 가결

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결로 의결한다.

나. 가결로 의결된 경우 별도의 의견 회신 절차 없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2. 조건부 의결

가. 인증기준에 대체로 적합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의결할 수 있다.

나. 조건부 의결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1) 인증기관이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절차를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 2) 경미한 사항으로 인증기관이 자체 확인을 통해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 다.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 시 반드시 보완사항 및 회신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회신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건부 보고

- 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보고로 의결한다.
- 나. 조건부 보고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별도 확인 후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다.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보고 결정 시 보완사항 및 회신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회신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재심의

- 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나 신청자의 개선 의지가 있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서면검토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재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나. 재심의를 1회에 한하여 개최한다.
- 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하는 경우 보완사항 및 회신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라. 재심의를 따른 심의수당은 최종심의에서 지급한다.

5. 불허

- 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다수이고, 신청자의 개선 의지가 없거나 정해진 기한 내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로 의결한다.
- 나. 불허로 의결된 경우 인증절차는 종료되며 재신청은 신규 신청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의에 필요한 경우 인증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에게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이후에 심의내용, 인증 심의 의결 기준, 조건에 대한 회신 기한 등을 기재한 인증심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④항의 결과서를 받은 후 소유자 등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심의위원회가 정한 회신기한 내에 조치계획 또는 보완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 등은 인증기관이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또는 보완결과를 정한 회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유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 보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1회에 한하여 최초 회신기한의 절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처리기간) ① 인증처리는 제2조의 인증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기간
2. 소유자등의 업무진행 보류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인증결정 및 통보) ① 인증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인증심의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인증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안내하는 사항
2.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공지하는 사항
3. 인증을 홍보 할 경우 인증 대상·인증기관명·인증기간을 포함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수하여 인증 받은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만료일을 산정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에서 1월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시정요구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에 따라 그 인증을 주무부처 및 운영기관에 취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유자등이 인증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사업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을 취소하려면 소유자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이하, 관련규정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제17조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현판과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폐기할 경우 소유자등 인증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사, 재심의 요청 등) ①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제19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의사 결정권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소명이 미흡한 사유의 경우 인증기관에서 반려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청시 인증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이 고시한 인증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의 재심사 및 재심의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심사 및 심의수당 등의 지급) 인증기관은 심사단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인증고시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수수료) ① 신청인등은 인증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이 고시한 인증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인증기관별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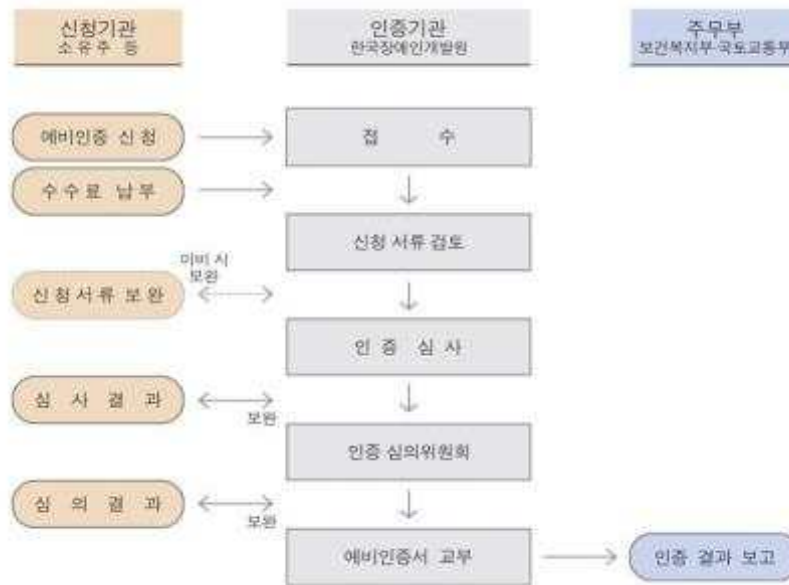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반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보호 의무) 인증 심사, 심의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정보공개업무처리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를 이루어 정보공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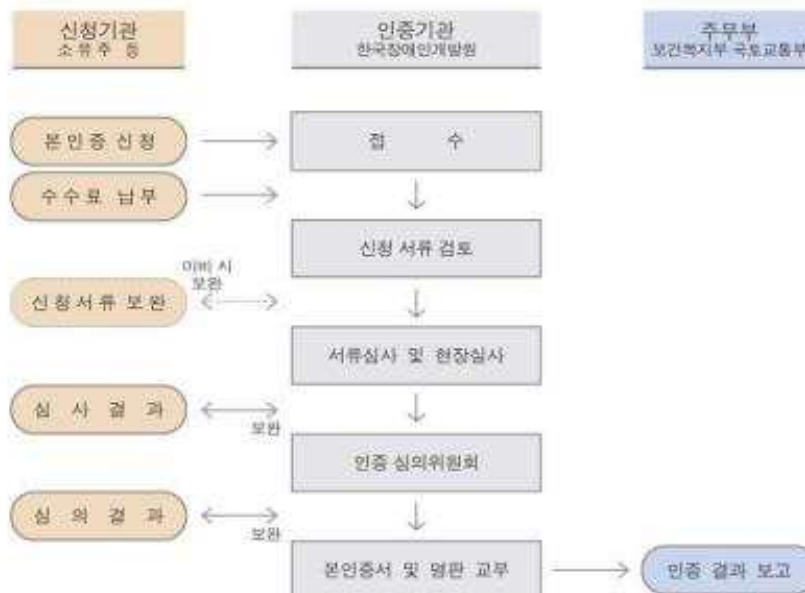
[별표 1]

인증심사 절차

1) 예비인증 절차



2) 본인증 절차



인증 심사위원 위촉 승낙서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직장)	이 메 일	
	(휴대폰)		
위촉기간			
위촉 직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심사위원		
주요이력	별첨		
위 본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인 000000의 인증 심사위원 위촉을 승낙함. 년 월 일 위 본인 (인) (인증기관명)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심사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심사위원 위촉
-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 보유 기간 :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간 보관
-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신용정보법 15조

인증 심의위원회 위촉 승낙서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직장)	이 메 일	
	(휴대폰)		
위촉기간			
위촉 직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심의위원		
주요이력	별첨		
위 본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인 000000의 인증 심의위원 위촉을 승낙함. 년 월 일 위 본인 (인) (인증기관명)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심의회 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심의위원 위촉
-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 보유 기간 :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간 보관
-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신용정보법 15조

○○○ 인증 ([]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팩 스		전 자 우 편			

인증대상									
------	--	--	--	--	--	--	--	--	--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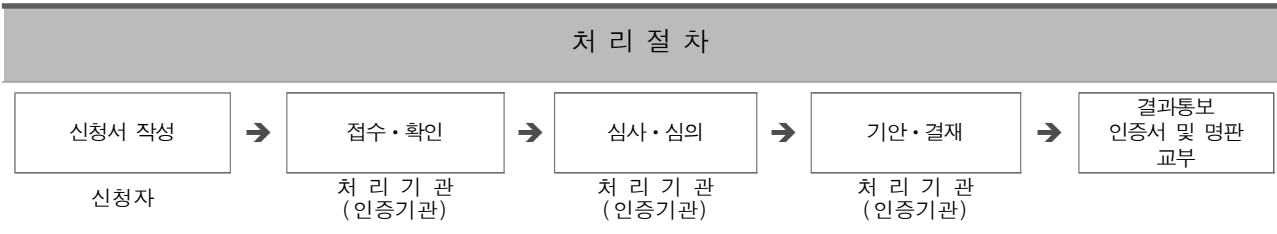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자체 평가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통합평가

2명 이상의 신청자에 따른 인증대상 도시사업이 하나의 도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심사대상 도시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가. 자체평가서 구성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나. 자체평가서 분량

자체평가서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4를 기준으로 하며, 근거 자료(부록, 첨부)를 포함하며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부수는 원본 2부이며 신청자도 1부 이상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자체평가서의 보완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서류심사 이전에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심사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자체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조사

- 1) 현장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그 밖의 시청각 기록 자료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2) 현장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도시의 무장애화 수준 및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바. 자료의 구성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사.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비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예비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예비인증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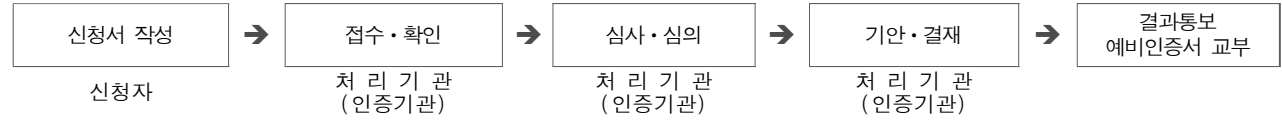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처 리 질 차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통합평가

2명 이상의 신청자에 따른 인증대상 도시사업이 하나의 도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심사대상 도시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가. 자체평가서 구성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나. 자체평가서 분량

자체평가서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4를 기준으로 하며, 근거 자료(부록, 첨부)를 포함하며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부수는 원본 2부이며 신청자도 1부 이상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자체평가서의 보완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서류심사 이전에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심사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자체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그 밖의 시청각 기록 자료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현장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도시의 무장애화 수준 및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바. 자료의 구성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사.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처리기간	20일
인증 신청 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인증 대상							
이 의 신 청 시 설	건축물명칭			기접수번호	(예비)인증 —		
	이의내용 (지면부족시 별지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처리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 신청서 1부.							
2. 이의 신청 증빙자료 1식.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해당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과 (인증기관명)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1)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심사)활동을 수행하며, 심의(심사) 기술의 고급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인증 결과에 영향을 끼칠 연관성, 향응, 교통 편의제공 및 기타 이익을 배제한다.
- 3) 인증기관의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4) 심의(심사)과정 중 인증 결과와 관련된 거짓 정보나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 5) 심의(심사)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 6) 윤리규정 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인증기관명)장에게 보고한다.

(인증기관명)장 귀하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명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단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사 회의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사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건축물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사단 명부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의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건축물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의결결과	
	인증심의위원회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의위원회 명부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인증 심의 등급부여 기준
				가	부	조건부	
(위원장)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 가결 - 원안통과 ○ 조건부 의결 - 경미한사항 ○ 조건부 보고 - 주요한사항 (답변재검토) ○ 재심의 - 대면 재검토 ○ 제외 - 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받기어려운시설 ○ 부결- 인증기준 부적합
1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2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3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4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최종 결과	찬성 명, 반대 명으로 가결 () · 불허 ()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 호,
-------	------------------------------	------------	------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 심의위원회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주요 심의 결과				인증대상	건축물

인증 심의위원회 명부

소 속	성 명	서 명

인증기관 로고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반영 여부	심사답변	심의결과	최종조치결과	비고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보행로	6								
		1.1.2 유효폭	3								
		1.1.3 단차	3								
		1.1.4 기울기	3								
		1.1.5 바닥마감	3								
		1.1.6 보행장애물	2								
		1.1.7 덮개	2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6								
		1.2.2 주차면수 확보	4								
		1.2.3 주차구역 크기	4								
		1.2.4 보행 안전통로	4								
		1.2.5 안내 및 유도표시	3								
	1.3 출입구 (문)	1.3.1 출입구(문)의 높이 차이	6								
		1.3.2 출입문의 형태	3								
		1.3.3 유효폭	3								
		1.3.4 단차	3								
		1.3.5 전면유효거리	2								
		1.3.6 손잡이	2								
		1.3.7 경고블록	2								
	소계		64								
	2. 내부시설	2.1 일반 출입문	2.1.1 단차	3							
2.1.2 유효폭			3								
2.1.3 전후면 유효거리			3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활동공간(날개벽)확인)			3								
2.2. 복도		2.2.1 유효폭	3								
		2.2.2 단차	3								
		2.2.3 바닥마감	2								
		2.2.4 보행장애물	2								
		2.2.5 연속손잡이	2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3							
		2.3.2 철평면 및 디딤판	3							
		2.3.3 바닥마감	2							
		2.3.4 손잡이	2							
		2.3.5 점형블록	2							
	2.4 경사로	2.4.1 유효폭	3							
		2.4.2 기울기	3							
		2.4.3 바닥마감	2							
		2.4.4 활동공간 및 휴식 참	2							
		2.4.5 손잡이	2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 공간	2							
		2.5.2 통과유효폭	2							
		2.5.3 유효바닥 면적	2							
		2.5.4 이용자 조작설비	3							
		2.5.5 시각 및 청각장애 인 안내장치	2							
2.5.6 수평손잡이		2								
2.5.7 점자블록		2								
소 계			63							
3. 위 생 시 설	3.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10							
		3.1.2 안내표지판	5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6							
		3.2.2 바닥마감	4							
		3.2.3 출입구(문)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5							
		3.3.2 활동공간	3							
		3.3.3 형태	3							
		3.3.4 손잡이	3							
		3.3.5 기타설비	3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 잡이	6							
	3.5 세면대	3.5.1 형태	3							
		3.5.2 거울	3							
		3.5.3 수도꼭지	3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3							
		3.6.2 기타설비	3							
	3.7 샤워실 및 탈의실	3.7.1 구조 및 마감	3							
		3.7.2 기타설비	3							
소계			72							
4. 안 내 시	4.1 안내설비	4.1.1 안내판	4							
		4.1.2 점자블록	3							

설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3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3							
	경보 및 피난설비	4.2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3							
소계			16							
5.기 타 시 설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5							
		5.1.2 설치위치	5							
		5.1.3 통과유효폭	3							
		5.1.4 활동공간	3							
		5.1.5 침대구조	2							
		5.1.6 객실바닥	2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3							
		5.1.8 유효 바닥면(화장실)	3							
		5.1.9 손잡이(화장실)	2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3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2							
		5.1.12 초인등(기타설비)	2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1 설치율	4							
		5.2.2 설치위치	3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4							
		5.2.4 열람석의 구조	2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 크	5.3.1 설치위치	2							
		5.3.2 설치 높이 및 하부 공간	3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2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2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2							
	5.5 피난구 설치	5.5.1 피난방법 및 설치 위치	3							
		5.5.2 피난의 구조	3							
	5.6 임산부 휴게시설	5.6.1 접근 유효폭 및 단 차	2							
		5.6.2 내부 구조	3							
소계			70							
6.기 타 설 비	6.1 비치 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 품	3							
		소계			3					
7.		5% (평가항목의 총점기								

[illegibl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단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사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대지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사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공원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사단 명부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 심사 결과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비고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1.1.1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1																
		<table><tr><td>구분</td><td>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td><td>1.0</td></tr><tr><td>우 수</td><td>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td><td>0.8</td></tr><tr><td>일 반</td><td>보차혼용 접근로</td><td>0.7</td></tr></table>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라 함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공원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입하는 것을 말함 - 공원 입구까지의 보행로에 있어 차량과의 간섭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보며, 차량과의 간섭부 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자 우선의 점접계획이 있을 경우 최우수로 봄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주출입구가 보도에서 직접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 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공 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점수	최우수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1.0	우 수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0.8	일 반	보차혼용 접근로	0.7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점수										
		최우수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1.0										
우 수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0.8																	
일 반	보차혼용 접근로	0.7																	
1.1.2유효폭	2																		
<table><tr><td>구분</td><td>접근로의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td><td>2.0</td></tr><tr><td>우 수</td><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td><td>1.6</td></tr><tr><td>일 반</td><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td><td>1.4</td></tr></table>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1.6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1.4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1.6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1.4																	
1.1.3 단차	1																		
<table><tr><td>구분</td><td>접근로의 단차</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전체구간에 단차 없음</td><td>1.0</td></tr><tr><td>우 수</td><td>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td><td>0.8</td></tr></table>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구분	접근로의 단차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1.0	우 수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0.8					
구분						접근로의 단차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1.0																	
우 수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0.8																	
1.1.4 기울기	2																		
<table><tr><td>구분</td><td>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td><td>2.0</td></tr><tr><td>우 수</td><td>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td><td>1.6</td></tr></table>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구분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2.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1.6					
구분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2.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1.6																	

	1.1.5 바닥마감 <table><tr><td>구분</td><td>바닥 재질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td><td>1.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td><td>0.8</td></tr><tr><td>일 반</td><td>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td><td>0.7</td></tr></table> -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구분	바닥 재질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	0.8	일 반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	0.7	1													
구분	바닥 재질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	0.8																									
일 반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	0.7																									
	1.1.6 보행장애물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table><tr><td>구분</td><td>보행장애물</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td><td>0.8</td></tr></table> - 장애물 구역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보도의 각종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table><tr><td>구분</td><td>접근로와 차도의 경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td><td>0.8</td></tr><tr><td>일 반</td><td>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td><td>0.7</td></tr></table>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구분	보행장애물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	1.0	우 수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	0.8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일 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0.7	2				
구분	보행장애물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	1.0																									
우 수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	0.8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일 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0.7																									
	1.1.7 덮개 <table><tr><td>구분</td><td>배수로 덮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td><td>1.0</td></tr><tr><td>우 수</td><td>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td><td>0.8</td></tr></table> -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구분	배수로 덮개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1.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0.8	1																
구분	배수로 덮개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1.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0.8																									
1.2 장애안전 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table><tr><td>구분</td><td>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td><td>1.0</td></tr><tr><td>우 수</td><td>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td><td>0.8</td></tr><tr><td>일 반</td><td>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로 설치</td><td>0.7</td></tr></table>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 받을 수 있음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주차장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1.2 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평가점수 비율을 1.2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안전용주차구역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 - B} \right)$ A : 공원까지의 접근성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분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부분평가점수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1.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0.8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로 설치	0.7	1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1.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0.8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로 설치	0.7																									

	1.2.2 주차면수 확보																
	<table><tr><td>구분</td><td>주차면수 확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td><td>1.0</td></tr><tr><td>우 수</td><td>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td><td>0.8</td></tr></tabl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 받을 수 있음	구분	주차면수 확보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1.0	우 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0.8	1						
	구분	주차면수 확보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1.0														
우 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0.8															
1.2.3 주차면																	
	<table><tr><td>구분</td><td>주차면 크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td>1.0</td></tr><tr><td>우 수</td><td>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td>0.8</td></tr></tabl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 받을 수 있음	구분	주차면 크기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0.8	1						
구분	주차면 크기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0.8															
	1.2.4 보행 안전통로																
	<table><tr><td>구분</td><td>보행안전통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td><td>0.8</td></tr><tr><td>일 반</td><td>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td><td>0.7</td></tr></tabl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단차 (2cm이상) 또는 차량우선의 간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 받을 수 있음	구분	보행안전통로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8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7	1			
구분	보행안전통로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8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7															
	1.2.5 안내 및 유도표시																
	<table><tr><td>구분</td><td>안내 및 유도표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td><td>0.8</td></tr><tr><td>일 반</td><td>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td><td>0.7</td></tr></table>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 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1.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0.8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0.7	1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1.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0.8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0.7															
1.3 출 입 구 (문)	1.3.1 진출입 통제 계획																
	<table><tr><td>구분</td><td>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5m이상의 유효폭으로 지그재그, 반원, 곡선 형태 등으로 출입구 계획</td><td>5.0</td></tr><tr><td>우 수</td><td>0.75m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진입역제 말뚝 설치하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일부분의 경우 휠체어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td><td>4.0</td></tr></table> - 차량 진입역제 말뚝의 경우 높이 0.8~1.0m, 지름 0.1m~0.2m이내로 설치되어야함 - 밝은 색의 반사도로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재질의 경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무물정도의 높이의 어두운 색의 블라드 등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 미부여) - 차량 진입역제 말뚝을 0.75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 등의 속도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함이며, 아	구분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점수	최우수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5m이상의 유효폭으로 지그재그, 반원, 곡선 형태 등으로 출입구 계획	5.0	우 수	0.75m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진입역제 말뚝 설치하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일부분의 경우 휠체어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	4.0	5						
구분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점수															
최우수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5m이상의 유효폭으로 지그재그, 반원, 곡선 형태 등으로 출입구 계획	5.0															
우 수	0.75m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진입역제 말뚝 설치하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일부분의 경우 휠체어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	4.0															

		울러 휠체어의 통과를 위해 출입구 일부는 휠체어만 통과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함 -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동선이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 동선과 분리될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 세부항목 - 보도와 공원 주출입구의 단차	1																
		<table><tr><td>구분</td><td>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 없이 수평접근</td><td>0.5</td></tr><tr><td>우 수</td><td>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td><td>0.4</td></tr><tr><td>일 반</td><td>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td><td>0.35</td></tr></table>		구분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0.4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0.35				
구분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0.4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0.35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table><tr><td>구분</td><td>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없이 수평접근</td><td>0.5</td></tr><tr><td>우 수</td><td>기울기 1/18(5.56%/3.18°)이하</td><td>0.4</td></tr><tr><td>일 반</td><td>기울기 1/12(8.33%/4.76°)이하</td><td>0.35</td></tr></table>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0.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0.35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0.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0.35																	
		- 단, 공원의 진출입을 위해 승강기가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면 우수로 평가																	
소 계																			
2.유도및안내시설	2.1안내설비	2.1.1 안내판설치	2																
		<table><tr><td>구분</td><td>안내판 설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td><td>1.4</td></tr></table>		구분	안내판 설치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2.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1.4				
구분	안내판 설치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2.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1.4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양각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2.1.2 안내판의 정보	2																
		<table><tr><td>구분</td><td>안내판의 정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에 조건을 만족하며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td><td>1.6</td></tr><tr><td>일 반</td><td>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td><td>1.4</td></tr></table>		구분	안내판의 정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	2.0	우 수	일반에 조건을 만족하며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1.4				
구분	안내판의 정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	2.0																	
우 수	일반에 조건을 만족하며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1.4																	
		- 공원 내 산책로 중 BF산책로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인지가 쉬워야 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촉지도식 혹은 점자 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제공되는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주차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표시가 없을시 등급을 얻지 못함																	
		2.1.3 통합안내 설비 • 세부항목 -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유도용 시설(점자블록 등) 설치	2																
		<table><tr><td>구분</td><td>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td><td>0.8</td></tr><tr><td>일 반</td><td>점자블록을 연속 설치</td><td>0.7</td></tr></table>		구분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1.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0.8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0.7				
구분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1.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0.8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0.7																	
		• 세부항목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table><tr><td>구분</td><td>청각장애인 안내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td><td>1.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td><td>0.8</td></tr><tr><td>일 반</td><td>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td><td>0.7</td></tr></table>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0.8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0.7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0.8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0.7																	
		2.1.4 경고시설	1																

		<table><tr><td>구분</td><td>경고시설</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주요 위험지역에 색상, 질감적으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하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하여 경고시설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주요 위험지역에 규정에 적합한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주의경고시설 설치</td><td>0.8</td></tr></table> - 주변과 조화된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공원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점형블록의 사용보다는 질감적, 색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마감재 사용	구분	경고시설	점수	최우수	주요 위험지역에 색상, 질감적으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하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하여 경고시설 설치	1.0	우 수	주요 위험지역에 규정에 적합한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주의경고시설 설치	0.8															
구분	경고시설	점수																								
최우수	주요 위험지역에 색상, 질감적으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하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하여 경고시설 설치	1.0																								
우 수	주요 위험지역에 규정에 적합한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주의경고시설 설치	0.8																								
소 계																										
3. 위생 시설	3.1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5																							
		<table><tr><td>구분</td><td>장애유형별 대응 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장실의 50%이상이 다목적 화장실</td><td>5.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최소1개 이상의 다목적 화장실설치</td><td>4.0</td></tr><tr><td>일 반</td><td>최소 1개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장애인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공원 내 2개소 이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전체 개수의 50%이상 적용</td><td>3.5</td></tr></table>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장실의 50%이상이 다목적 화장실	5.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최소1개 이상의 다목적 화장실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장애인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공원 내 2개소 이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전체 개수의 50%이상 적용	3.5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장실의 50%이상이 다목적 화장실	5.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최소1개 이상의 다목적 화장실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장애인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공원 내 2개소 이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전체 개수의 50%이상 적용	3.5																								
		3.1.2 안내표지판	2																							
		<table><tr><td>구분</td><td>안내표지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다기능에 대한 안내표지 있음</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축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td><td>1.6</td></tr><tr><td>일 반</td><td>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td><td>1.4</td></tr></table>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안내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다기능에 대한 안내표지 있음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축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1.6	일 반	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4							
구분	안내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다기능에 대한 안내표지 있음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축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1.6																								
일 반	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4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3																							
		• 세부항목 -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1.5m이상 통로폭 확보</td><td>1.5</td></tr><tr><td>우 수</td><td>1.2m이상 통로폭 확보</td><td>1.2</td></tr><tr><td>일 반</td><td>0.9m이상 통로폭 확보</td><td>1.05</td></tr></table> • 세부항목 - 단차 <table><tr><td>구분</td><td>단차</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전혀 단차 없음</td><td>1.5</td></tr><tr><td>우 수</td><td>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td><td>1.2</td></tr><tr><td>일 반</td><td>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td><td>1.05</td></tr></table>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1.5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1.2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1.05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1.05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1.5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1.2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1.05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1.05																								
		3.2.2 바닥 마감	2																							
		<table><tr><td>구분</td><td>바닥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td><td>1.6</td></tr><tr><td>일 반</td><td>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td><td>1.4</td></tr></table>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3.2.3 출입구(문)	3																							

	<table><tr><td>구분</td><td>형태 및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td><td>3.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td><td>2.4</td></tr><tr><td>일 반</td><td>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td><td>2.1</td></tr></table>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형태 및 유효폭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구분	형태 및 유효폭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 세부항목 -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유효폭 1.0m이상</td><td>0.5</td></tr><tr><td>우 수</td><td>유효폭 0.9m이상</td><td>0.4</td></tr></table> • 세부항목 - 형태 <table><tr><td>구분</td><td>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자동문</td><td>0.5</td></tr><tr><td>우 수</td><td>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td><td>0.4</td></tr></table>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table><tr><td>구분</td><td>사용여부 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td><td>0.5</td></tr><tr><td>우 수</td><td>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td><td>0.4</td></tr><tr><td>일 반</td><td>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td><td>0.35</td></tr></table> • 세부항목 - 잠금장치 <table><tr><td>구분</td><td>잠금장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td><td>0.5</td></tr><tr><td>우 수</td><td>잠금장치를 설치함</td><td>0.4</td></tr></table>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정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구분	형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구분	사용여부 설비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5	구분	잠금장치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4	2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구분	형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구분	사용여부 설비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5																																												
구분	잠금장치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4																																												
	3.3.2 활동공간 <table><tr><td>구분</td><td>활동공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이 되도록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td><td>1.6</td></tr></table>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1.6	2																																			
구분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1.6																																												
	3.3.3 형태 <table><tr><td>구분</td><td>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td><td>1.4</td></tr></table> -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1.4	2																																
구분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1.4																																												
	3.3.4 손잡이	2																																												

	<table><tr><td>구분</td><td>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td><td>1.6</td></tr></table>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3.3.5 기타설비 <table><tr><td>구분</td><td>기타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td><td>1.6</td></tr></table>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 0.5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기타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2.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6	2							
구분	기타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2.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6																
3.4 소변기	3.4.1 형태 및 손잡이 <table><tr><td>구분</td><td>형태 및 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 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td><td>1.4</td></tr></table>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형태 및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 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2				
구분	형태 및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 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3.5 세면대	3.5.1 형태 <table><tr><td>구분</td><td>세면대 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td><td>0.8</td></tr><tr><td>일 반</td><td>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길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td><td>0.7</td></tr></table>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0.8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길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0.7	1				
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0.8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길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0.7																
	3.5.2 거울	1																

		<table><tr><td>구분</td><td>거울</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확대경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td><td>0.8</td></tr><tr><td>일 반</td><td>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td><td>0.7</td></tr></table>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거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확대경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0.8	일 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0.7												
구분	거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확대경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0.8																								
일 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0.7																								
		3.5.3 수도꼭지	1																							
		<table><tr><td>구분</td><td>수도꼭지</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광감지식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td><td>0.8</td></tr></table> -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구분	수도꼭지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1.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0.8											
구분	수도꼭지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1.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0.8																								
소계																										
4. 편의 접근 및 시설 이용성	4.1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1																							
		<table><tr><td>구분</td><td>시설까지의 접근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주 산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td><td>1.0</td></tr><tr><td>우 수</td><td>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유도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td><td>0.8</td></tr><tr><td>일 반</td><td>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안전보행로로 연결</td><td>0.7</td></tr></table> - 주 산책로와 인접해 있다함은 주 산책로에서 시설의 입구가 바로 보임을 말함 - 주 산책로에서 따로 접근로를 두어 시설로 접근할 경우 접근로는 '1.1 보도 및 접근로' 일반 이상의 기준을 따르며 일반 미만일 경우 등급 미부여 - 공원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접근 및 이용성(4.1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평가점수비율을 4.1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text{시설까지의 접근로부분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 - B} \right)$ A :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부분 점수합계 C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부문평가점수					구분	시설까지의 접근로	점수	최우수	주 산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1.0	우 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유도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0.8	일 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안전보행로로 연결	0.7								
구분	시설까지의 접근로	점수																								
최우수	주 산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1.0																								
우 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유도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0.8																								
일 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안전보행로로 연결	0.7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2																							
		• 세부항목 - 주출입구 높이차이 <table><tr><td>구분</td><td>주출입구 높이차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없이 수평접근</td><td>1.0</td></tr><tr><td>우 수</td><td>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td><td>0.8</td></tr><tr><td>일 반</td><td>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td><td>0.7</td></tr></table>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table><tr><td>구분</td><td>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없이 수평접근</td><td>1.0</td></tr><tr><td>우 수</td><td>기울기 1/18(5.56%/3.18°)이하</td><td>0.8</td></tr><tr><td>일 반</td><td>기울기 1/12(8.33%/4.76°)이하</td><td>0.7</td></tr></table>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서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 - 공원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구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	0.8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	0.7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구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	0.8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	0.7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0.7																								
4.2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8																							
공원시설		<table><tr><td>구분</td><td>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통합시설로 설치</td><td>8.0</td></tr><tr><td>우 수</td><td>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td><td>6.4</td></tr></table> - 통합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 시설을 말함 -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함은 위험지역의 난간설치 계획,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가 포함되					구분	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	점수	최우수	통합시설로 설치	8.0	우 수	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	6.4											
구분	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	점수																								
최우수	통합시설로 설치	8.0																								
우 수	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	6.4																								

		며 이는 모든 시설에 기본이 되어야 함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동(수직 이동 포함)에 어려움이 없음을 말함																																									
4.3 기타설비	4.3.1 휴식공간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table><tr><td>구분</td><td>휴게시설의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td><td>0.6</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td><td>0.48</td></tr><tr><td>일 반</td><td>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td><td>0.42</td></tr></table>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그 평가 등급을 얻지 못함 -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구조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0.6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0.48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0.42	1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0.6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0.48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0.42																																									
		<table><tr><td>구분</td><td>휴게의자의 구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td><td>0.4</td></tr><tr><td>우 수</td><td>등받이가 설치</td><td>0.32</td></tr></table> -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함	구분	휴게의자의 구조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0.4	우 수	등받이가 설치	0.32																																
구분	휴게의자의 구조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0.4																																									
우 수	등받이가 설치	0.32																																									
	4.3.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table><tr><td>구분</td><td>매표소</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설까지 유도 안내시설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앞 점형블록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상단높이 0.7m~0.9m, 하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td><td>1.4</td></tr></table> <table><tr><td>구분</td><td>판매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판매기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여 위치 안내</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조작부에 점자 표시 함께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및 투입구 및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 설치, 버튼식 설치</td><td>1.4</td></tr></table> <table><tr><td>구분</td><td>음료대</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 주변구역의 바닥 재질을 달리 마감하여 위치 안내</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조작기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td><td>1.4</td></tr></table>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구분	매표소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설까지 유도 안내시설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앞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상단높이 0.7m~0.9m, 하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	1.4	구분	판매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판매기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조작부에 점자 표시 함께 설치	1.6	일 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및 투입구 및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 설치, 버튼식 설치	1.4	구분	음료대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 주변구역의 바닥 재질을 달리 마감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조작기 설치	1.6	일 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1.4	2				
구분	매표소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설까지 유도 안내시설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앞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상단높이 0.7m~0.9m, 하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	1.4																																									
구분	판매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판매기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조작부에 점자 표시 함께 설치	1.6																																									
일 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및 투입구 및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 설치, 버튼식 설치	1.4																																									
구분	음료대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 주변구역의 바닥 재질을 달리 마감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조작기 설치	1.6																																									
일 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1.4																																									
소계																																											
5. BF보행로 내부 보행연속성	5.1 공원 내부 보행연속성	5.1.1 BF보행로의 지정	2																																								
		<table><tr><td>구분</td><td>BF보행로의 지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유도 안내의 연속성도 확보</td><td>2.0</td></tr><tr><td>우 수</td><td>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주요공원시설(화장실 등)간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BF보행로 지정</td><td>1.6</td></tr><tr><td>일 반</td><td>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BF보행로 지정</td><td>1.4</td></tr></table> - 주요 산책로 등을 BF보행로로 지정하고 이외의 다른 보행로는 경사도 및 재질 등을 평가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보행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좀 더 다양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배려임 - 최우수에서 말하는 유도 안내의 연속성의 확보는 BF보행유도의 연속성 및 주요 BF보행로 상에 위치한 시설의 안내 및 주출입구에서부터 안내(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배려한 음성안내, 촉지도식 안내판,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된 표지판의 연속된 설치 등)가 되어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함	구분	BF보행로의 지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유도 안내의 연속성도 확보	2.0	우 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주요공원시설(화장실 등)간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6	일 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4																													
구분	BF보행로의 지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유도 안내의 연속성도 확보	2.0																																									
우 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주요공원시설(화장실 등)간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6																																									
일 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4																																									

--	--	--	--	--

6			
---	--	--	--

6			
---	--	--	--

- | | | | |
|---|--|--|--|
| 6 | | | |
|---|--|--|--|

1			
---	--	--	--

1			
---	--	--	--

- | | | | |
|---|--|--|--|
| 1 | | | |
|---|--|--|--|

5				
---	--	--	--	--

5				
---	--	--	--	--

- | | | | | |
|---|--|--|--|--|
| 5 | | | | |
|---|--|--|--|--|

2				
---	--	--	--	--

2				
---	--	--	--	--

- | | | | | |
|---|--|--|--|--|
| 2 | | | | |
|---|--|--|--|--|

[illegible][illegible]

- [illegible]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10					
		구분	보행유도의 연속성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의 보행유도를 위해 연속적인 물길, 보행로와 어울리는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유도						10.0
		우 수	시각장애인의 보행유도 및 시설안내를 위해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						8.0
		일 반	시각장애인의 유도 및 경고를 위하여 전체구간 보도의 양 옆으로 보행 유도존을 설치						7.0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함 - 유도용 선형블록을 이용한 보행유도 지양함 - 보행 유도존이라 함은 보행안전공간 양 측에 경계용 공간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존을 말함 - 공원 주출입구에서의 길 찾기를 최우선으로 검토(공원내부에서 주출입구까지 들어갔다 나가는 동선의 유도 연속성 확보여부)							
소계									
6. 종합평가 기타의견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대지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의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공원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의결결과	
	인증심의위원회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의위원회 명부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인증 심의 등급부여 기준
				가	부	조건부	
(위원장)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 가결 - 원안통과 ○ 조건부 의결 - 경미한사항 ○ 조건부 보고 - 주요한사항 (답변재검토) ○ 재심의 - 대면 재검토 ○ 제외 - 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받기어려운시설 ○ 부결- 인증기준 부적합
1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2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3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4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회신 기한 :

최종 결과	찬성 명, 반대 명으로 가결 () · 불허 ()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 호,
-------	------------------------------	------------	------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 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대지면적	m ²	심의일자	
주요 심의 결과				인증대상	공원

인증 심의위원회 서명

소 속	성 명	의 결 서 명		
		가	부	조건부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인증기관 로고

		3.3.5 기타설비	2							
	3.4 소변기	3.4.1 형태 및 손잡이	2							
	3.5 세면대	3.5.1 형태	1							
		3.5.2 거울	1							
		3.5.3 수도꼭지	1							
소계			30							
4	4.1 편의 접근 및 시설 이용성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1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2							
	4.2 공원 시설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8							
	4.3 기타 설비	4.3.1 휴식공간	1							
		4.3.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2							
소계			14							
5	5.1 BF보행의 연속성	5.1.1 BF보행로의 지정	2							
		5.1.2 보행안전 공간	6							
		5.1.3 단차	1							
		5.1.4 기울기	5							
		5.1.5 바닥 마감	2							
		5.1.6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2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10							
소계			28							
6.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종합 평가										
기 타 의 견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단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사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사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여객시설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사단 명부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객시설 심사 결과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비고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3				
	구분					
	최우수					
	우 수					
	일 반					
	1.1.2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2				
	구분					
	최우수					
	우 수					
	일 반					
	1.1.3 유효폭	2				
	구분					
	최우수					
	우 수					
	일 반					
	1.1.4 단차	2				
	구분					
	최우수					
	우 수					
	1.1.5 기울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d>구분</td><td>턱 낮추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이상이며 기울기 1/12(8.33%/4.76°)이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 2cm이하</td><td>1.6</td></tr><tr><td>일 반</td><td>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 설치</td><td>1.4</td></tr></table> -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편도 왕복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음)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 2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으로 하고 기울기 1/12(8.33%/4.76°),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 1/10(10%/5.71°)이하로 함 -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 2.0m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 0.9m이상인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음	구분	턱 낮추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이상이며 기울기 1/12(8.33%/4.76°)이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 2cm이하	1.6	일 반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 설치	1.4					
	구분	턱 낮추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이상이며 기울기 1/12(8.33%/4.76°)이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 2cm이하	1.6															
	일 반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 설치	1.4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table><tr><td>구분</td><td>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td><td>3.0</td></tr><tr><td>우 수</td><td>40m이내에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td><td>2.4</td></tr><tr><td>일 반</td><td>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경사로의 기울기 1/12(8.33%/4.76°)이하임</td><td>2.1</td></tr></table>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3.0	우 수	40m이내에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	2.4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경사로의 기울기 1/12(8.33%/4.76°)이하임	2.1	3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3.0																
우 수	40m이내에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	2.4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경사로의 기울기 1/12(8.33%/4.76°)이하임	2.1																
	1.2.2 주차면수 확보 <table><tr><td>구분</td><td>주차면수 확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규정비율 100%초과 확보</td><td>2.0</td></tr><tr><td>우 수</td><td>규정비율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td><td>1.6</td></tr></tabl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구분	주차면수 확보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 100%초과 확보	2.0	우 수	규정비율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1.6	2							
구분	주차면수 확보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 100%초과 확보	2.0																
우 수	규정비율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1.6																
	1.2.3 주차면 <table><tr><td>구분</td><td>주차면 크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td>2.0</td></tr><tr><td>우 수</td><td>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td>1.6</td></tr></tabl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폭 3.3m이상, 길이 5.0m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0m이상, 길이 6.0m이상으로 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함	구분	주차면 크기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2.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6	2							
구분	주차면 크기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2.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6																
	1.2.4 보행안전 통로 <table><tr><td>구분</td><td>보행안전통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td><td>1.4</td></tr></tabl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점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구분	보행안전통로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6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4	2				
구분	보행안전통로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6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4																
	1.2.5 안내 및 유도표시	2																

	<table><tr><td>구분</td><td>안내 및 유도표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td><td>1.6</td></tr><tr><td>일 반</td><td>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td><td>1.4</td></tr></table>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 및 신고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1.6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1.4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1.6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1.4																																							
1.3 주출입구 (문)	1.3.1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table><tr><td>구분</td><td>주출입구(문) 높이차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없이 수평접근</td><td>1.5</td></tr><tr><td>우 수</td><td>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td><td>1.2</td></tr><tr><td>일 반</td><td>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td><td>1.0</td></tr></table> <table><tr><td>구분</td><td>주출입구(문) 높이차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없이 수평접근</td><td>1.5</td></tr><tr><td>우 수</td><td>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td><td>1.2</td></tr><tr><td>일 반</td><td>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td><td>1.0</td></tr></table> <table><tr><td>구분</td><td>주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단차 없이 수평접근</td><td>1.5</td></tr><tr><td>우 수</td><td>기울기 1/18(5.56%/3.18°)이하</td><td>1.2</td></tr><tr><td>일 반</td><td>기울기 1/12(8.33%/4.76°)이하</td><td>1.0</td></tr></table>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구분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0	구분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0	구분	주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1.2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1.0	3			
구분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0																																							
구분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0																																							
구분	주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1.2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1.0																																							
	1.3.2 주출입문의 형태 <table><tr><td>구분</td><td>주출입문의 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자동문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자동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회전문 또는 양방향 개폐식문이 아닌 문 설치</td><td>1.4</td></tr></table>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2.0	우 수	자동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1.6	일 반	회전문 또는 양방향 개폐식문이 아닌 문 설치	1.4	2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2.0																																							
우 수	자동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1.6																																							
일 반	회전문 또는 양방향 개폐식문이 아닌 문 설치	1.4																																							
	1.3.3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td><td>2.0</td></tr><tr><td>우 수</td><td>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td><td>1.6</td></tr><tr><td>일 반</td><td>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td><td>1.4</td></tr></table>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서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1.4	2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1.4																																							
	1.3.4 단차 <table><tr><td>구분</td><td>단 차</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주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td><td>2.0</td></tr><tr><td>우 수</td><td>주출입구(문) 단차 2cm이하</td><td>1.6</td></tr></table> - 주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받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구분	단 차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2.0	우 수	주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1.6	2																														
구분	단 차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2.0																																							
우 수	주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1.6																																							

		1.3.5 전면 유효거리																	
		<table><tr><td>구분</td><td>전면 유효거리</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td><td>2.0</td></tr><tr><td>우 수</td><td>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td><td>1.6</td></tr><tr><td>일 반</td><td>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td><td>1.4</td></tr></table>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 가능함	구분	전면 유효거리	점수	최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2				
구분	전면 유효거리	점수																	
최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1.3.6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table><tr><td>구분</td><td>손잡이 및 점자표지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자동문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td><td>1.6</td></tr><tr><td>일 반</td><td>손잡이는 0.8m ~ 0.9m사이에 위치하며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td><td>1.4</td></tr></table> - 문을 당길때는 수직막대형, 문을 밀때는 수평막대형 손잡이가 유리함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1.6	일 반	손잡이는 0.8m ~ 0.9m사이에 위치하며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2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1.6																	
일 반	손잡이는 0.8m ~ 0.9m사이에 위치하며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1.3.7 경고블록																	
		<table><tr><td>구분</td><td>경고블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td><td>1.4</td></tr></table> -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 경우, 적용되는 여객시설내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구분	경고블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2				
구분	경고블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소 계																	
2. 내부시설	2.1 통로	2.1.1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모든 통로의 유효폭 3.0m이상, 우수의 조건을 만족</td><td>2.0</td></tr><tr><td>우 수</td><td>모든 통로의 유효폭 2.5m이상, 일반의 조건을 만족</td><td>1.6</td></tr><tr><td>일 반</td><td>모든 통로의 유효폭 2.0m이상, 통로 끝 부분의 넓이를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넓이(1.8m×1.8m) 확보</td><td>1.4</td></tr></table> - 여객시설 내에서의 통로란 측면에 경계벽이 있어 주출입구나 승강장, 화장실 등 목적지까지 유도가 가능한 길을 말함 - 통로는 주출입구 현관부터 탑승장까지 이동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유효폭 1.8m는 휠체어사용자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최소폭이고, 복도의 유효폭 1.5m는 휠체어 2대 중 1대가 정지한 채로 교행 할 수 있는 최소 치수임 - 한 개의 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통로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모든 통로의 유효폭 3.0m이상, 우수의 조건을 만족	2.0	우 수	모든 통로의 유효폭 2.5m이상, 일반의 조건을 만족	1.6	일 반	모든 통로의 유효폭 2.0m이상, 통로 끝 부분의 넓이를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넓이(1.8m×1.8m) 확보	1.4	2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모든 통로의 유효폭 3.0m이상, 우수의 조건을 만족	2.0															
		우 수	모든 통로의 유효폭 2.5m이상, 일반의 조건을 만족	1.6															
일 반	모든 통로의 유효폭 2.0m이상, 통로 끝 부분의 넓이를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넓이(1.8m×1.8m) 확보	1.4																	
2.1.2 단차																			
<table><tr><td>구분</td><td>단차</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td><td>2.0</td></tr><tr><td>우 수</td><td>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td><td>1.6</td></tr></table>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2.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1.6	2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2.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1.6																	
2.1.3 바닥 마감																			
<table><tr><td>구분</td><td>바닥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td><td>1.6</td></tr><tr><td>일 반</td><td>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td><td>1.4</td></tr></table>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2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2.1.4 보행장애물																			

	<table><tr><td>구분</td><td>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td><td>2.0</td></tr><tr><td>우 수</td><td>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td><td>1.6</td></tr></table>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지름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계단의 손잡이는 가능한 한 양측에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손잡이가 끊어지면 시각장애인은 계단이 끝난 것으로 인식하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계단의 손잡이는 보행 장애인에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지팡이가 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재난 시 생명선이 됨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2.2.5 점형블록	2															
	<table><tr><td>구분</td><td>점형블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td><td>1.6</td></tr></table>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2.0	우 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2.0															
우 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2.3 경사로	2.3.1 유효폭	2															
	<table><tr><td>유효폭</td><td>점수</td></tr><tr><td>경사로의 유효폭이 2m이상</td><td>2.0</td></tr></table> - 경사로의 유효폭 2m이상은 휠체어가 교행 할 수 있는 통로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통로폭이 2m인 경우에 부분적으로 경사로가 설치되면 통로폭이 작아짐으로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규정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의 유효폭 항목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유효폭	점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2m이상	2.0												
유효폭	점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2m이상	2.0																
	2.3.2 기울기	2															
	<table><tr><td>구분</td><td>기울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td><td>2.0</td></tr><tr><td>우 수</td><td>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td><td>1.6</td></tr></table>	구분	기울기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1.6							
구분	기울기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1.6															
	2.3.3 바닥 마감	2															
	<table><tr><td>구분</td><td>바닥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td><td>2.0</td></tr><tr><td>우 수</td><td>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td><td>1.6</td></tr></table>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2.3.4 활동공간 및 휴식참	2															
	<table><tr><td>구분</td><td>활동공간 및 휴식참</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td><td>1.4</td></tr></table>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규정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의 활동공간 및 휴식참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 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 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2.3.5 손잡이	2															
	<table><tr><td>구분</td><td>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td><td>1.6</td></tr><tr><td>일 반</td><td>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td><td>1.4</td></tr></table>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일 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4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일 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4															

		<table><tr><td>구분</td><td>수평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td><td>1.0</td></tr><tr><td>우 수</td><td>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td><td>0.8</td></tr></table>	구분	수평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1.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0.8														
구분	수평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1.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0.8																							
		2.4.6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시설	1																						
		<table><tr><td>구분</td><td>기타시설</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td><td>1.0</td></tr><tr><td>우 수</td><td>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td><td>0.8</td></tr></table>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구분	기타시설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0.8														
구분	기타시설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0.8																							
		2.4.7 점자블록	1																						
		<table><tr><td>구분</td><td>점형블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td><td>1.0</td></tr><tr><td>우 수</td><td>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td><td>0.8</td></tr></table>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0.8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0.8																							
소 계																									
3. 위생 시설	3.1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5																						
		<table><tr><td>구분</td><td>장애유형별 대응 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td><td>5.0</td></tr><tr><td>우 수</td><td>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td><td>4.0</td></tr><tr><td>일 반</td><td>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td><td>3.5</td></tr></table>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배점함 ※ 전체층수는 블록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5.0	우 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3.5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5.0																							
우 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3.5																							
		3.1.2 안내표지판 설치	5																						
		<table><tr><td>구분</td><td>안내표지판 설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td><td>5.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td><td>4.0</td></tr><tr><td>일 반</td><td>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아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td><td>3.5</td></tr></table>	구분	안내표지판 설치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 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아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구분	안내표지판 설치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 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아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3.2 화장실의 접근	3.2.1 접근	<table><tr><td>구분</td><td>단차</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전혀 단차 없음</td><td>1.5</td></tr></table> <table><tr><td>구분</td><td>점형블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핸드레일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안내표시 설치</td><td>1.5</td></tr><tr><td>우 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td><td>1.2</td></tr><tr><td>일 반</td><td>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td><td>1.0</td></tr></table>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핸드레일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안내표시 설치	1.5	우 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1.2	일 반	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0	3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핸드레일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안내표시 설치	1.5																							
우 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1.2																							
일 반	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0																							
	3.2.2 바닥 마감		2																						

	<table><tr><td>구분</td><td>바닥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td><td>1.6</td></tr><tr><td>일 반</td><td>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td><td>1.4</td></tr></table>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3.2.3 출입구(문) <table><tr><td>구분</td><td>출입구(문)</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2m이상 확보</td><td>3.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0m이상 확보</td><td>2.4</td></tr><tr><td>일 반</td><td>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td><td>2.1</td></tr></table>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설치하는 경우는 휠체어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삼가야 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구분	출입구(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	2.1	3																																	
구분	출입구(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	2.1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table><tr><td>구분</td><td>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유효폭 1.0m이상</td><td>0.5</td></tr><tr><td>우 수</td><td>유효폭 0.9m이상</td><td>0.4</td></tr><tr><td>일 반</td><td>유효폭 0.8m이상</td><td>0.3</td></tr></table> <table><tr><td>구분</td><td>형 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자동문</td><td>0.5</td></tr><tr><td>우 수</td><td>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td><td>0.4</td></tr></table> <table><tr><td>구분</td><td>사용여부 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td><td>0.5</td></tr><tr><td>우 수</td><td>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td><td>0.4</td></tr><tr><td>일 반</td><td>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td><td>0.3</td></tr></table> <table><tr><td>구분</td><td>잠금장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 설치함</td><td>0.5</td></tr><tr><td>우 수</td><td>잠금장치 설치함</td><td>0.4</td></tr></table>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을 측정함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일 반	유효폭 0.8m이상	0.3	구분	형 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구분	사용여부 설비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	구분	잠금장치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 설치함	0.4	2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일 반	유효폭 0.8m이상	0.3																																													
구분	형 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구분	사용여부 설비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																																													
구분	잠금장치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 설치함	0.4																																													
	3.3.2 활동공간 <table><tr><td>구분</td><td>활동공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인 되도록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td><td>1.6</td></tr><tr><td>일 반</td><td>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인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td><td>1.4</td></tr></table> - 대변기의 칸막이 유효바닥면적 폭 1.4m, 깊이 1.8m는 휠체어사용자가 대변기에 전면으로 접근하여 대변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최소공간을 상정한 것이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폭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구분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인 되도록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1.6	일 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인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1.4	2																																	
구분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인 되도록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1.6																																													
일 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인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1.4																																													
	3.3.3 형태 <table><tr><td>구분</td><td>형 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설치</td><td>1.4</td></tr></table>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구분	형 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설치	1.4	2																																	
구분	형 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설치	1.4																																													
	3.3.4 손잡이	2																																													

	<table><tr><td>구분</td><td>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의 손잡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td><td>1.6</td></tr></table>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3.3.5 기타설비 <table><tr><td>구분</td><td>기타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 벨 및 등반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td><td>1.4</td></tr></table>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구분	기타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 벨 및 등반이 설치	2.0	우 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1.6	일 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4	2			
구분	기타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 벨 및 등반이 설치	2.0															
우 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1.6															
일 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4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설치 <table><tr><td>구분</td><td>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 소변기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td><td>1.4</td></tr></table> -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 장애인을 배려한 것임 - 소변기를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성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최소한 1개는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2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3.5 세면대	3.5.1 형태 <table><tr><td>구분</td><td>세면대 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td><td>1.4</td></tr></table> -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카운터식 세면대를 설치함 - 카운터식 세면대는 상판이 평탄하고, 세면기 아래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P-트랩, 전면 물 흐름 방지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1.6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1.4	2			
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1.6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1.4															
	3.5.2 거울 <table><tr><td>구분</td><td>거울</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td><td>1.6</td></tr></table>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구분	거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2.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1.6	2						
구분	거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2.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1.6															
	3.5.3 수도꼭지	2															

		<table><tr><td>구분</td><td>수도꼭지</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광감지식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차표시</td><td>1.6</td></tr></table>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차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구분	수도꼭지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2.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차표시	1.6						
구분	수도꼭지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2.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차표시	1.6															
소계																	
4. 안 내 시 설	4.1 점자블록	4.1.1 설치 위치	5														
		<table><tr><td>구분</td><td>설치 위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 또는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여 명확한 색대비를 통해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td><td>5.0</td></tr><tr><td>우 수</td><td>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td><td>4.0</td></tr></table> - 점형블록은 매표소와 같이 정보제공이 필요한 장소 또는 위험을 경고할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교차되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함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함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구분	설치 위치	점수	최우수	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 또는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여 명확한 색대비를 통해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5.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4.0		
	구분	설치 위치	점수														
	최우수	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 또는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여 명확한 색대비를 통해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5.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4.0														
4.2 안내설비	4.2.1 안내판 설치	4															
	<table><tr><td>구분</td><td>안내판 설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td><td>4.0</td></tr><tr><td>우 수</td><td>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td><td>3.2</td></tr><tr><td>일 반</td><td>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td><td>2.8</td></tr></table>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0.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양각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구분	안내판 설치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2.8
	구분					안내판 설치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2.8															
4.2.2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3																
<table><tr><td>구분</td><td>시각장애인 안내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td><td>2.4</td></tr><tr><td>일 반</td><td>점자블록을 연속 설치</td><td>2.1</td></tr></table>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385.0(dB)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4.2.3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3																
<table><tr><td>구분</td><td>청각장애인 안내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td><td>3.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td><td>2.4</td></tr><tr><td>일 반</td><td>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td><td>2.1</td></tr></table>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2.4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2.1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2.4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2.1															
4.3 경보 및 피난설비	4.3.1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5															
	<table><tr><td>구분</td><td>시각·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td><td>5.0</td></tr><tr><td>우 수</td><td>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td><td>4.0</td></tr></table>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 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구분	시각·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5.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4.0			
구분	시각·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5.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4.0															
4.4	4.4.1 설치장소	2															

접수대 및 안내소		<table><tr><td>구분</td><td>설치장소</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기립자세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등에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난간 또는 의자를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접수대는 출입구 옆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td><td>1.6</td></tr><tr><td>일 반</td><td>접수대는 출입구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td><td>1.4</td></tr></table>	구분	설치장소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기립자세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등에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난간 또는 의자를 설치	2.0	우 수	접수대는 출입구 옆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1.6	일 반	접수대는 출입구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1.4	2				
		구분	설치장소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기립자세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등에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난간 또는 의자를 설치	2.0															
		우 수	접수대는 출입구 옆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1.6															
일 반	접수대는 출입구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1.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4.4.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table><tr><td>구분</td><td>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 및 지팡이 세우는 곳을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td><td>1.4</td></tr></table>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 및 지팡이 세우는 곳을 설치	1.6	일 반	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 및 지팡이 세우는 곳을 설치	1.6																	
일 반	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소계												
----	--	--	--	--	--	--	--	--	--	--	--	--

5.기타시설	5.1 매표소 및 판매기	5.1.1 매표소	<table><tr><td>구분</td><td>매표소</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으로 매표소의 위치정보를 안내함</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높이 0.7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td><td>1.4</td></tr></table>	구분	매표소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으로 매표소의 위치정보를 안내함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높이 0.7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2				
		구분	매표소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으로 매표소의 위치정보를 안내함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높이 0.7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 매표소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매표소의 0.3m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5.1.2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table><tr><td>구분</td><td>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과 질감을 달리한 점형블록의 기능 확보</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에 설치, 점자표기 된 누름버튼식 형태</td><td>1.4</td></tr></table>	구분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과 질감을 달리한 점형블록의 기능 확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에 설치, 점자표기 된 누름버튼식 형태	1.4								
구분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과 질감을 달리한 점형블록의 기능 확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에 설치, 점자표기 된 누름버튼식 형태	1.4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함																				

5.2 개찰구	5.2.1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table><tr><td>구분</td><td>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 유도 표시는 휠체어사용자의 개찰구와 분리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이 별도로 설치</td><td>2.4</td></tr><tr><td>일 반</td><td>일반자동개찰구 이외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자동개찰구가 별도로 설치</td><td>2.1</td></tr></table>	구분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 유도 표시는 휠체어사용자의 개찰구와 분리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이 별도로 설치	2.4	일 반	일반자동개찰구 이외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자동개찰구가 별도로 설치	2.1	3				
		구분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 유도 표시는 휠체어사용자의 개찰구와 분리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이 별도로 설치	2.4															
일 반	일반자동개찰구 이외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자동개찰구가 별도로 설치	2.1																	
-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함 - 자동개찰구인 경우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역무원이 가까운 쪽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개찰구를 별도로 배치함 - 시각장애인 유도표시는 휠체어사용자의 개찰구와 분리하여 승강장 탑승구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통행량이 많은 주 보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유도로를 설치함																			
5.2.2 통과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통과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td><td>3.0</td></tr><tr><td>우 수</td><td>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0m이상 확보</td><td>2.4</td></tr><tr><td>일 반</td><td>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0.8m이상 확보</td><td>2.1</td></tr></table>	구분	통과 유효폭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3.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0m이상 확보	2.4	일 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0.8m이상 확보	2.1							
구분	통과 유효폭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3.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0m이상 확보	2.4																	
일 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0.8m이상 확보	2.1																	

5.3 승강장	5.3.1 기울기		2					

		<table><tr><td>구분</td><td>승강장 기울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td><td>2.0</td></tr><tr><td>우 수</td><td>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td><td>1.6</td></tr><tr><td>일 반</td><td>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td><td>1.4</td></tr></table> - 승강장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요점은 최대한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구분	승강장 기울기	점수	최우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	2.0	우 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1.6	일 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1.4				
구분	승강장 기울기	점수																
최우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	2.0																
우 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1.6																
일 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1.4																
	5.3.2 바닥 마감	<table><tr><td>구분</td><td>바닥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td><td>1.6</td></tr><tr><td>일 반</td><td>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td><td>1.4</td></tr></table>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2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5.3.3 점형블록	<table><tr><td>구분</td><td>점형블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m~0.9m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 설치</td><td>1.4</td></tr></table> - 승강장은 교통수단의 접점이므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동과 승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스크린도어 등 추락방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 -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함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1.6	일 반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m~0.9m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 설치	1.4	2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1.6																
일 반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m~0.9m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 설치	1.4																
	5.3.4 승강장과 차량간격	<table><tr><td>구분</td><td>승강장과 차량간격</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및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td><td>2.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td><td>1.6</td></tr><tr><td>일 반</td><td>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을 5cm내외</td><td>1.4</td></tr></table> -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cm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함(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발목 등이 빠지거나 휠체어의 바퀴,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등이 틈에 끼지 않도록 안전발판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함	구분	승강장과 차량간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및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1.6	일 반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을 5cm내외	1.4	2			
구분	승강장과 차량간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및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1.6																
일 반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을 5cm내외	1.4																
	5.3.5 스크린도어	<table><tr><td>구분</td><td>스크린도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스크린도어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1.1m~1.5m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거나 또는 승강장의 차량접근을 경고하는 음성안내설비를 갖추</td><td>1.6</td></tr><tr><td>일 반</td><td>위험을 경고하는 점형블록 설치</td><td>1.4</td></tr></table> -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함	구분	스크린도어	점수	최우수	스크린도어 설치	2.0	우 수	1.1m~1.5m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거나 또는 승강장의 차량접근을 경고하는 음성안내설비를 갖추	1.6	일 반	위험을 경고하는 점형블록 설치	1.4	2			
구분	스크린도어	점수																
최우수	스크린도어 설치	2.0																
우 수	1.1m~1.5m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거나 또는 승강장의 차량접근을 경고하는 음성안내설비를 갖추	1.6																
일 반	위험을 경고하는 점형블록 설치	1.4																
	5.3.6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table><tr><td>구분</td><td>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td><td>2.0</td></tr></table> -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함	구분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2.0	2									
구분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2.0																
		소계																
6. 종합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평가		구분	여객시설 평가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기 타 의 견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의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여객시설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의결결과	
	인증심의위원회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의위원회 명부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인증 심의 등급부여 기준
				가	부	조건부	
(위원장)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 가결 - 원안통과 ○ 조건부 의결 - 경미한사항 ○ 조건부 보고 - 주요한사항 (답변재검토) ○ 재심의 - 대면 재검토 ○ 제외 - 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받기어려운시설 ○ 부결- 인증기준 부적합
1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2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3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4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회신 기한 :

최종 결과	찬성 명, 반대 명으로 가결 () · 불허 ()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 호,
-------	------------------------------	------------	------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 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주요 심의 결과				인증대상	여객시설

인증 심의위원회 서명

소 속	성 명	의 결 서 명		
		가	부	조건부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객시설 심의결과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반영 여부	심사답변	심의결과	최종조치결과	비고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1.1.2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1.1.3 유효폭										
		1.1.4 단차										
		1.1.5 기울기										
		1.1.6 바닥 마감										
		1.1.7 보행장애물										
		1.1.8 덮개										
		1.1.9 차량 진출입부										
		1.1.10 턱 낮추기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1.2.2 주차면수 확보										
		1.2.3 주차면										
		1.2.4 보행안전 통로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3 주출입구 (문)	1.3.1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1.3.2 주출입문의 형태										
		1.3.3 유효폭										
		1.3.4 단차										
		1.3.5 전면 유효거리										
		1.3.6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3.7 경고블록										
소 계												
2. 내부 시설	2.1 통로	2.1.1 유효폭										
		2.1.2 단차										
		2.1.3 바닥 마감										
		2.1.4 보행장애물										
		2.1.5 손잡이										
	2.2 계단	2.2.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2.2.2 첩면 및 디딤판										
		2.2.3 바닥 마감										
		2.2.4 손잡이										

		2.2.5 점형블록								
	2.3 경사로	2.3.1 유효폭								
		2.3.2 기울기								
		2.3.3 바닥 마감								
		2.3.4 활동공간 및 휴식참								
		2.3.5 손잡이								
	2.4 승강기	2.4.1 설치장소								
		2.4.2 전면 활동공간								
2.4.3 크기										
2.4.4 이용자 조작설비										
2.4.5 수평손잡이										
2.4.6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 시설										
2.4.7 점자블록										
소 계										
3. 위생 시설	3.1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3.1.2 안내표지판 설치								
	3.2 화장실의 접근	3.2.1 접근								
		3.2.2 바닥 마감								
		3.2.3 출입구(문)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3.3.2 활동공간								
		3.3.3 형태								
		3.3.4 손잡이								
		3.3.5 기타설비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설치								
	3.5 세면대	3.5.1 형태								
		3.5.2 거울								
3.5.3 수도꼭지										
소계										
4. 안내 시설	4.1 점자블록	4.1.1 설치 위치								
	4.2 안내설비	4.2.1 안내판 설치								
		4.2.2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4.2.3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4.3 경보 및 피난설비	4.3.1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4.4 접수대 및 안내소	4.4.1 설치장소								
		4.4.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소계										
5.	5.1	5.1.1 매표소								

기 타 시 설	매 표 소 및 판매 기	5.1.2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5.2 개찰구	5.2.1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 구								
		5.2.2 통과 유효폭								
	5.3 승강장	5.3.1 기울기								
		5.3.2 바닥 마감								
		5.3.3 점형블록								
		5.3.4 승강장과 차량간격								
		5.3.5 스크린도어								
5.3.6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소계										
6.종합평가										
기타의견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단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사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사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지역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사단 명부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예비)인증 지역 심사 결과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비고											
1. 장애인 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1.1 BF 계획 수립	1.1.1 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IT기술 적용, 통합디자인 계획																
		<table><tr><td>구 분</td><td>평점</td></tr><tr><td>도시계획 수립시 BF 계획 기준 도입</td><td>3.0</td></tr><tr><td>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td><td>5.0</td></tr><tr><td>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한 BF 도시계획 수립</td><td>2.0</td></tr><tr><td>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td><td>3.0</td></tr></table>						구 분	평점	도시계획 수립시 BF 계획 기준 도입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5.0	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한 BF 도시계획 수립	2.0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	3.0	
	구 분	평점																
	도시계획 수립시 BF 계획 기준 도입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5.0																
	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한 BF 도시계획 수립	2.0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	3.0																
	- 통합디자인이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시설이용 약자를 위해 구분되어 계획되는 디자인 개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용자를 고려하여 계획되는 디자인을 의미함 예)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개념이 아닌, 계단 없이 주출입구를 디자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경우에 해당함																	
	1.2 녹 지 망 조성계획	1.2.1 공원																
		- 공원부분 인증 평가 점수 = $\frac{\sum \text{개별 공원 면적} \times \text{개별 공원 평가 점수}}{\text{도시내 전체 공원 면적}} = \frac{(P_1 \times p_1) + (P_2 \times p_2) + \dots}{(P_1 + P_2 + \dots)}$ (P : 개별 공원 면적, p : 개별 공원 평가 점수)																
1.2.2 녹도의 연계 방안 및 녹지조성																		
<table><tr><td>구 분</td><td>평점</td></tr><tr><td>녹지의 최소한 1면이상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계획</td><td>3.0</td></tr><tr><td>도시내 녹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행로와 통합하여 계획</td><td>3.0</td></tr></table>	구 분						평점	녹지의 최소한 1면이상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계획	3.0	도시내 녹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행로와 통합하여 계획	3.0							
구 분	평점																	
녹지의 최소한 1면이상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계획	3.0																	
도시내 녹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행로와 통합하여 계획	3.0																	
-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함 - 녹지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녹지를 말함																		
1.3 이용시설 계획	1.3.1 이용시설의 집적 및 계획																	
	<table><tr><td>구분</td><td>지역생활중심시설의 집적계획</td><td>평가항목 점수</td></tr><tr><td>최우수</td><td>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td><td>4.0</td></tr><tr><td>우 수</td><td>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BF 보행로와 연계</td><td>3.2</td></tr><tr><td>일 반</td><td>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여 단속된 이동 동선 확보</td><td>2.8</td></tr></table>						구분	지역생활중심시설의 집적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	4.0	우 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BF 보행로와 연계	3.2	일 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여 단속된 이동 동선 확보	2.8
	구분						지역생활중심시설의 집적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	4.0										
	우 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BF 보행로와 연계	3.2										
일 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여 단속된 이동 동선 확보	2.8																
- 연속된 BF 보행로의 연계는 차로 등으로 분리되거나 이동동선이 단절되는 부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집적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해당함																		
1.3.2 복지시설 설치 계획																		
<table><tr><td>구분</td><td>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td><td>평가항목 점수</td></tr><tr><td>최우수</td><td>인식이 용이한 장소로 대지가 평탄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td><td>2.4</td></tr><tr><td>일 반</td><td>복지시설(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수립</td><td>2.1</td></tr></table>	구분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인식이 용이한 장소로 대지가 평탄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3.0	우 수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2.4	일 반	복지시설(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수립	2.1	
구분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인식이 용이한 장소로 대지가 평탄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3.0																
우 수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2.4																
일 반	복지시설(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수립	2.1																
- 규모가 큰 복지시설의 경우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R : 왕복 6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6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2.2.2 왕복 4차로 도로											
		- 왕복 4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frac{\sum \text{왕복 4차로 도로 연장} \times \text{왕복 4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text{도시내 전체 왕복 4차로 도로 연장}}$ = $\frac{(R_1 \times p_1) + (R_2 \times p_2) + \cdots}{(R_1 + R_2 + \cdots)}$											
		(R : 왕복 4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4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2.2.3 왕복 2차로 도로											
		- 왕복 2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frac{\sum \text{왕복 2차로 도로 연장} \times \text{왕복 2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text{도시내 전체 왕복 2차로 도로 연장}}$ = $\frac{(R_1 \times p_1) + (R_2 \times p_2) + \cdots}{(R_1 + R_2 + \cdots)}$											
		(R : 왕복 2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2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2.2.4 보차공존 도로											
		- 보차공존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frac{\sum \text{보차공존 도로 연장} \times \text{보차공존 도로 인증 평가 점수}}{\text{도시내 전체 보차공존 도로 연장}}$ = $\frac{(R_1 \times p_1) + (R_2 \times p_2) + \cdots}{(R_1 + R_2 + \cdots)}$											
		(R : 보차공존 도로 연장, p : 보차공존 도로 인증 평가 점수)											
		2.2.5 보행자전용 도로											
		-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frac{\sum \text{보행자전용 도로 연장} \times \text{보행자전용 도로 인증 평가 점수}}{\text{도시내 전체 보행자전용 도로 연장}}$ = $\frac{(R_1 \times p_1) + (R_2 \times p_2) + \cdots}{(R_1 + R_2 + \cdots)}$											
		(R : 보행자전용 도로 연장, p : 보행자전용 도로 인증 평가 점수)											
소 계													
3. 장애물 없는 도시관리	3.1 제도화	3.1.1 지구단위계획, 지침·조례, 제도 관리·운영방안											
		<table><tr><td>구 분</td><td>평점</td></tr><tr><td>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td><td>5.0</td></tr><tr><td>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td><td>2.0</td></tr></table>	구 분	평점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	5.0	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2.0					
구 분	평점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	5.0												
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2.0												
소계													
4. 기타 의견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의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지역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의결결과	
	인증심의위원회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의위원회 명부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주요 심의 내용
				가	부	조건부	
(위원장)						의결/보고	○ 조건부 의결 - 경미한사항 ○ 조건부 보고 - 주요한사항 (답변재검토) ○ 제외-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받기어려운시설 회신 기한 :
1							
2							
3							
4							

최종 결과	찬성 명, 반대 명으로 가결 () · 불허 ()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 호,
-------	------------------------------	------------	------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 심의위원회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주요 심의 결과				인증대상	지역

인증 심의위원회 명부

소 속	성 명	서 명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예비)인증 지역 심사 결과 답변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반영 여부	심사답변	심의결과	비고
1. 장 애 를 없 는 도 시 구 성 체 계	1.1 BF 계획 수립	1.1.1 계획기준, IT기술 적 용, 통합디자인 계획								
	1.2 녹지 조성 및 녹도 연계 방안	1.2.1 공원								
		1.2.2 녹도의 연계방안 및 녹지조성								
	1.3 이용 시설 의 집적 및 연계	1.3.1 이용시설의 집적계획								
		1.3.2 복지시설 설치 계획								
	1.4 교통 시설 계획	1.4.1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1.4.2 교통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성								
	소계									
2. 장 애 를 없 는 보 행 네 트 워 크	2.1 보 행	2.1.1 BF 구조								
		2.1.2 BF 구조의 연속성								
	2.2 도로	2.2.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2.2.2 왕복 4차로 도로								
		2.2.3 왕복 2차로 도로								
		2.2.4 보차공존도로								
		2.2.5 보행자전용 도로								
	소계									
3. 장 애 를 없 는 도 시 관 리	3.1 제 도 화	3.1.1 지침·조례, 제도 관리· 운영방안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단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사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사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도로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사단 명부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예비)인증 도로(왕복 6차선 이상도로) 심사 결과 답변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비고											
1. 보 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table><tr><td>구분</td><td>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td><td>8.0</td></tr><tr><td>우 수</td><td>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td><td>6.4</td></tr><tr><td>일 반</td><td>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td><td>5.6</td></tr></table>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결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 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 (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	8.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6.4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	5.6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	8.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6.4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	5.6																
1.1.2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장애물 구역 유효폭 2.0m이상</td><td>8.0</td></tr><tr><td>우 수</td><td>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td><td>6.4</td></tr><tr><td>일 반</td><td>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td><td>5.6</td></tr></table>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 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구역의 폭원이 0.9m이하 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 구역을 설치한 경우 일반으로 평가함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2.0m이상	8.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6.4	일 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5.6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2.0m이상	8.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6.4																
일 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5.6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table><tr><td>구분</td><td>자전거 도로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장애물 구역에 연결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td><td>5.0</td></tr><tr><td>우 수</td><td>장애물 구역에 연결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td><td>4.0</td></tr></table> -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획할 경우(차도-자전거 도로-장애물 구역-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 등) 최상급으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자전거 도로(1.2항목전체)를 제외한 보도부분 평가 점수비율을 자전거 도로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text{자전거 도로부분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 - B} \right)$ A : 보도부분 전체점수합계 B : 자전거 도로부분 전체점수합계 C : 자전거 도로부분을 제외한 보도부분평가점수 - 자전거의 일방통행 방향은 차량 소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일방통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결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5.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결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4.0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결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5.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결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4.0																
1.2.2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자전거 도로의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td><td>2.0</td></tr><tr><td>우 수</td><td>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td><td>1.6</td></tr><tr><td>일 반</td><td>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td><td>1.4</td></tr></table>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평가함	구분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구분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1.2.3 기울기 및 휴식참																	

	<table><tr><td>구분</td><td>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td><td>1.0</td></tr><tr><td>우 수</td><td>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td><td>0.8</td></tr><tr><td>일 반</td><td>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휴식참 이 설치되어 있음</td><td>0.7</td></tr></table>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기울기를 평가함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휴식참 이 설치되어 있음	0.7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 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휴식참 이 설치되어 있음	0.7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table><tr><td>구분</td><td>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td><td>1.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td><td>0.8</td></tr><tr><td>일 반</td><td>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 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 방향), 높이차 없음</td><td>0.7</td></tr></table> - 자전거 도로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 우 평가하지 않음 - 배수가 잘 되는 자전거 도로의 바닥 마감재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 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않음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 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 방향), 높이차 없음	0.7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 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 방향), 높이차 없음	0.7															
	1.2.5 통행방향 및 표식 <table><tr><td>구분</td><td>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td><td>1.0</td></tr><tr><td>우 수</td><td>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td><td>0.8</td></tr><tr><td>일 반</td><td>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td><td>0.7</td></tr></table> - 양방향통행의 자전거 도로 소통방향을 표시할 경우 보행 안전구역에 면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은 차량 소통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함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table><tr><td>구분</td><td>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 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td><td>10.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 합함</td><td>8.0</td></tr><tr><td>일 반</td><td>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td><td>7.0</td></tr></table> - 보행안전구역은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 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 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 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 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않음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가 2cm 이하로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 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3.7 참조)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 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 합함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0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 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 합함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0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table><tr><td>구분</td><td>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td><td>10.0</td></tr><tr><td>우 수</td><td>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td><td>8.0</td></tr><tr><td>일 반</td><td>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td><td>7.0</td></tr></table>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 폭을 평가함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7.0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7.0															

	<table><tr><td>구분</td><td>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td><td>7.0</td></tr><tr><td>우 수</td><td>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td><td>5.6</td></tr></table>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7.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6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7.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6												
	1.4.2 재질 및 색상 <table><tr><td>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td><td>점수</td></tr><tr><td>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td><td>3.0</td></tr></table>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 급외로 평가함	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3.0									
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3.0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table><tr><td>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td><td>7.0</td></tr></table>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항상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서 턱낮추기를 실시할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 부분은 장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물 구역을 넘어서 자전거 도로 혹은 보행안전구역 등을 좌우기울기를 변경시킬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그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할 수 있음[기울기는 1/18(5.56%/3.18°)이하를 유지하고, 보행안전구역은 좌우기울기 없이 설치될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는 등급외로 평가함] - 차량의 보행안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일 경우 유도 및 경고용띠의 영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말뚝의 간격은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점수	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	7.0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점수													
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	7.0													
	1.5.2 재질 및 색상 <table><tr><td>구분</td><td>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td><td>2.4</td></tr></table>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보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 및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진입부 및 경계에 운전자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는 요철바닥 등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임 - 차량 진출입부의 색상은 주변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3.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2.4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3.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2.4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table><tr><td>구분</td><td>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td><td>4.0</td></tr><tr><td>우 수</td><td>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td><td>3.2</td></tr><tr><td>일 반</td><td>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td><td>2.8</td></tr></table>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4.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3.2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8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4.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3.2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8																								
	1.6.2 휴게시설 <table><tr><td>구분</td><td>휴게시설의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td><td>5.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td><td>4.0</td></tr><tr><td>일 반</td><td>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td><td>3.5</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 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table><tr><td>구분</td><td>휴게의자 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등받이가 설치</td><td>1.6</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5.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4.0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3.5	구분	휴게의자 형태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5.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4.0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3.5																								
구분	휴게의자 형태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1.6.3 이용편의시설 <table><tr><td>구분</td><td>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td><td>2.0</td></tr><tr><td>우 수</td><td>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td><td>1.6</td></tr></table>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구분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구분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3.6)																							
		소 계		0	0																				
2. 횡단 시설	2.1 입체 횡단방식	2.1.1 설치방법																							
		<table><tr><td>구분</td><td colspan="2">입체 횡단시설의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 colspan="2">자연지형 혹은 주변 건물을 이용하여 입체 횡단시설을 설치함</td><td>6.0</td></tr><tr><td>우 수</td><td colspan="2">기존 육교 등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입체 횡단시설</td><td>4.8</td></tr><tr><td>일 반</td><td colspan="2">기존 육교 등에 1/18(5.56%/3.18°)의 경사도를 가진 경사로가 설치된 입체 횡단시설</td><td>4.2</td></tr></table>			구분	입체 횡단시설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자연지형 혹은 주변 건물을 이용하여 입체 횡단시설을 설치함		6.0	우 수	기존 육교 등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입체 횡단시설		4.8	일 반	기존 육교 등에 1/18(5.56%/3.18°)의 경사도를 가진 경사로가 설치된 입체 횡단시설		4.2					
		구분	입체 횡단시설의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자연지형 혹은 주변 건물을 이용하여 입체 횡단시설을 설치함		6.0																				
		우 수	기존 육교 등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입체 횡단시설		4.8																				
		일 반	기존 육교 등에 1/18(5.56%/3.18°)의 경사도를 가진 경사로가 설치된 입체 횡단시설		4.2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은 보행광장형, 자연지형 활용형, 공원 광장형, 건물 입체형 등의 횡단방식을 말함 - 해당구간에 입체 횡단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보행섬식 횡단방식으로만 평가하며, 보행섬식 횡단방식의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입체 횡단방식의 평가점수를 산정함 입체 횡단방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a}{A} \right)$ A : 보행섬식 횡단방식 부문의 전체 점수 합계 a : 보행섬식 횡단방식 부문의 평가 점수 B : 입체 횡단방식 부문의 전체 점수 합계 - 해당구간 모든 입체 횡단시설 설치방법의 평균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함 - 입체 횡단방식에 계단 이외의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 평가 등급은 등급외로 평가함(휠체어용 리프트는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1.2 수직이동수단 - 개요																							
		<table><tr><td></td><td>계단</td><td>경사로</td><td>승강기</td><td>점수</td></tr><tr><td>계단 + 승강기</td><td>8점</td><td></td><td>16점 (가중치2배)</td><td>24점</td></tr><tr><td>계단 + 경사로</td><td>8점</td><td>8점</td><td></td><td>16점</td></tr><tr><td>계단 + 경사로 + 승강기</td><td>8점</td><td>8점</td><td>8점</td><td>24점</td></tr></table>				계단	경사로	승강기	점수	계단 + 승강기	8점		16점 (가중치2배)	24점	계단 + 경사로	8점	8점		16점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8점	8점	8점	24점	
			계단	경사로	승강기	점수																			
계단 + 승강기	8점		16점 (가중치2배)	24점																					
계단 + 경사로	8점	8점		16점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8점	8점	8점	24점																					
- 해당구간 모든 입체 횡단시설 설치방법의 평균 점수를 평가 점수로 산정함 - 입체 횡단방식에 계단 이외의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단, 휠체어용 리프트는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입체 횡단방식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2.1.2.1 계단참 및 유효폭																									
<table><tr><td>구분</td><td>계단참 및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td><td>2.4</td></tr><tr><td>일 반</td><td>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td><td>2.1</td></tr></table>			구분	계단참 및 유효폭	점수	최우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3.0	우 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4	일 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1											
구분	계단참 및 유효폭	점수																							
최우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3.0																							
우 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4																							
일 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1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 계단의 유효폭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유효폭은 입체 횡단시설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각종 설치물 등으로 축소된 가장 좁은 폭을 당해 계단의 유효폭으로 함 - 규정에 적절한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입체 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2.1.2.2 첩면 및 디딤판																									
<table><tr><td>구분</td><td>첩면 및 디딤판</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고 첩면과 디딤판의 색상 등을 달리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td><td>1.5</td></tr><tr><td>우 수</td><td>디딤판(단폭) 0.28m이상, 첩면(단높이) 0.18m이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m이상)인 계단참을 설치</td><td>1.2</td></tr></table>			구분	첩면 및 디딤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고 첩면과 디딤판의 색상 등을 달리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	1.5	우 수	디딤판(단폭) 0.28m이상, 첩면(단높이) 0.18m이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m이상)인 계단참을 설치	1.2														
구분	첩면 및 디딤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고 첩면과 디딤판의 색상 등을 달리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	1.5																							
우 수	디딤판(단폭) 0.28m이상, 첩면(단높이) 0.18m이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m이상)인 계단참을 설치	1.2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첩면 및 디딤판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에 첩면이 없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미끄럼 정도 <table><tr><td colspan="2">미끄럼 정도</td><td>점수</td></tr><tr><td colspan="2">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td><td>1.5</td></tr></table>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미끄럼정도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미끄럼 정도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5																	
미끄럼 정도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5																							

- 계단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등으로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2.1.2.3 손잡이 및 안내방법					
구분	손잡이 형태	점수			
최우수	연속손잡이 설치(2단 설치)	1.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0.8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손잡이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로 손잡이의 지지대 등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 지점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보다 30cm이상 연장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점자를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점형블록					
점형블록		점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 시작과 끝지점에 경고형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1.0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점형블록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2.1.3.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구분	유효폭 및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1.8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3.0			
우 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4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유효폭은 입체횡단시설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각종 설치를 등으로 축소된 가장 좁은 폭을 당해 경사로의 유효폭으로 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2.1.3.2 기울기 및 휴식참					
구분	기울기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기울기 1/24(4.17%/2.39°)이하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1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경사로의 기울기 예외규정[1/8(12.5%/7.13°)이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음					
2.1.3.3 손잡이 및 바닥 재질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손잡이 양측면에 차갑지 않은 재질로 2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1.0			
우 수	손잡이 양측면에 차갑지 않은 재질로 1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0.8			
일 반	손잡이 양측면에 1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0.7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손잡이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로, 손잡이의 지지대 등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 지점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보다 0.3m이상 연장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바닥 재질					
바닥 재질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0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바닥 재질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2.1.4.1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2.2.2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table><tr><td>구분</td><td>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td><td>10.0</td></tr><tr><td>우 수</td><td>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td><td>8.0</td></tr><tr><td>일 반</td><td>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td><td>7.0</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으로 산정함 - 시각장애인이 보도경계를 명확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연석 경사로 방식의 턱낮추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부분 경사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도의 폭(보행안전구역, 장애물 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의 전체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석 경사로 설치를 인정함 - 보도의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 보도전체를 차로와 나란하게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보도와 차도 경계의 바닥 높이차가 2cm이하일 경우를 최상급으로 인정함(보도는 좌우 기울기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울기 및 바닥 높이차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보행섬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을 그대로 유지하여 차도와 보행섬이 높이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높이차 그대로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함			구분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점수	최우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10.0	우 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8.0	일 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7.0				
	구분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점수																
	최우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10.0																
우 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8.0																	
일 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7.0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table><tr><td>구분</td><td>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 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로)를 사용</td><td>7.0</td></tr><tr><td>우 수</td><td>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td><td>5.6</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식 횡단보도 진입부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으로 산정함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은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 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로)를 사용	7.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5.6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 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로)를 사용	7.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5.6																	
	2.2.4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table><tr><td>구분</td><td>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차량 진입억제용 가드레일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td><td>2.4</td></tr><tr><td>일 반</td><td>보행섬 유효 폭 1.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td><td>2.1</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으로 산정함 -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전후면 차도의 색상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경고할 경우 한 등급 상황 평가함			구분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점수	최우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차량 진입억제용 가드레일 설치	3.0	우 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4	일 반	보행섬 유효 폭 1.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1				
	구분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점수																
	최우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차량 진입억제용 가드레일 설치	3.0																
우 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4																	
일 반	보행섬 유효 폭 1.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1																	
2.2.5 조명의 조도																			
<table><tr><td>구분</td><td>횡단시설 조명의 조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td><td>3.0</td></tr><tr><td>우 수</td><td>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td><td>2.4</td></tr><tr><td>일 반</td><td>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td><td>2.1</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횡단시설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으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높게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4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1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4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1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table><tr><td>구분</td><td>교통신호기 설치 위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td><td>9.0</td></tr></table>			구분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9.0											
구분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9.0																	

	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text{승하차시설부분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B} \right)$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분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분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보행안전구역과 높이차 없이 수평이동이 가능한 대기공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공간 진입 시 바닥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구조일 경우 대기공간과 면한 해당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게 되며,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table><tr><td>구분</td><td>연석 높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0.15m이상 0.2m미만</td><td>1.5</td></tr><tr><td>우 수</td><td>0.2m이상 0.25m미만</td><td>1.2</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연석 높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부분 경사로 <table><tr><td>부분 경사로</td><td>점수</td></tr><tr><td>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td><td>1.5</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부분 경사로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버스 및 택시 등은 차도로 내려가서 승하차하지 않고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연석이 매우 높아(0.3m이상 등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차량으로 옮겨타기 불가능할 경우에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차량으로 옮겨타기 용이한 높이로 연석이 설치되어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text{승하차시설부분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B} \right)$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분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분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구분	연석 높이	점수	최우수	0.15m이상 0.2m미만	1.5	우 수	0.2m이상 0.25m미만	1.2	부분 경사로	점수	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	1.5				
구분	연석 높이	점수																
최우수	0.15m이상 0.2m미만	1.5																
우 수	0.2m이상 0.25m미만	1.2																
부분 경사로	점수																	
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	1.5																	
	3.1.3 경고방식 <table><tr><td>구분</td><td>경고방식</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td><td>3.0</td></tr><tr><td>우 수</td><td>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td><td>2.4</td></tr></table>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의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선형블록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text{승하차시설부분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B} \right)$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분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분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구분	경고방식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3.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2.4								
구분	경고방식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3.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2.4																
	3.1.4 안내시설																	

		<table><tr><td>구분</td><td>안내시설</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식 음성으로 안내함</td><td>3.0</td></tr><tr><td>우 수</td><td>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td><td>2.4</td></tr><tr><td>일 반</td><td>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 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td><td>2.1</td></tr></table>	구분	안내시설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식 음성으로 안내함	3.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2.4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 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1				
		구분	안내시설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식 음성으로 안내함	3.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2.4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 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1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안내시설의 안내방법 평균점수를 평가점으로 산정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조작기라 함은, 기기의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그 이상일 경우 상단이 15°정도 기울어져 휠체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로 된 조작기기를 말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 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text{승하차시설부분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frac{C}{A - B} \right)$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분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분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소 계			0	0														
4. 종합평가	<table><tr><td>구분</td><td>편의시설 평가</td><td>점수</td></tr><tr><td>등급 구분 없음</td><td>※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td><td></td></tr></table>	구분	편의시설 평가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구분	편의시설 평가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소 계			0	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의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도로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의결결과	
	인증심의위원회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의위원회 명부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주요 심의 내용
				가	부	조건부	
(위원장)						의결/보고	○ 조건부 의결 - 경미한사항 ○ 조건부 보고 - 주요한사항 (답변재검토) ○ 제외-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받기어려운시설 회신 기한 :
1							
2							
3							
4							

최종 결과	찬성 명, 반대 명으로 가결 () · 불허 ()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 호,
-------	------------------------------	------------	------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 심의위원회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주요 심의 결과				인증대상	도로

인증 심의위원회 명부

소 속	성 명	서 명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예비)인증 도로(왕복 6차선 이상도로) 심사 결과 답변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반영 여부	심사답변	심의결과	비고
1. 보 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1.1.2 유효폭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1.2.2 유효폭							
		1.2.3 기울기 및 휴식참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1.2.5 통행방향 및 표식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1.3.2 유효폭 및 교행구 간								
	1.3.3 기울기 및 휴식참								
	1.3.4 연속성								
	1.3.5 유효안전 높이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1.3.7 바닥 설치물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1.4.2 재질 및 색상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1.5.2 재질 및 색상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1.6.2 휴게시설							
		1.6.3 이용편의 시설							
소계									
2. 횡 단 시 설	2.1 입체 횡단방식	2.1.1 설치방법							
		2.1.2 수직이동 수단-계단							
		2.1.3 수직이동 수단-경사 로							
		2.1.4 수직이동 수단-승강 기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2.2.1 설치방법							
		2.2.2 부분 경사로의 유효 폭 및 기울기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2.2.4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2.2.5 조명의 조도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2.3.2 잔여시간 표시기							
		2.3.3 음향(진동) 신호기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위치							
소계									
3. 기 타 시 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3.1.3 경고방식							
		3.1.4 안내시설							
소계									
4. 총 합 평 가		4. 종합평가							
소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단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사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면적	-	심의일자	

인증심사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교통수단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사단 명부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			
3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수단 심사 결과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비고
1. 버스	1.1 승강구	1.1.1 휠체어 승강설비	15				
		구분					
		최우수					
		우수					
		일반					
	1.1.2 승강구 유효폭	구분	5				
		최우수					
		우수					
		일반					
	1.1.3 승강구 바닥 마감	구분	5				
		최우수					
		우수					
		일반					
	1.1.4 승강구 계단 디딤판	구분	5				
		최우수					
		우수					
		일반					
1.2 차내 설비	1.2.1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		5				

	<table><tr><td>구분</td><td>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확보</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td><td>5.0</td></tr><tr><td>우수</td><td>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0%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td><td>4.0</td></tr><tr><td>일반</td><td>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3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td><td>3.5</td></tr></table> - 출입구의 높이(지면에서 차량바닥까지의 높이 : 약 0.3cm~0.35cm)가 버스차량의 바닥높이와 동일한 저상버스의 장점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뿐만 아니라, 버스이용자 모두에게 승하차시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저상버스의 바닥높이까지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승강 보조설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함	구분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확보	점수	최우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5.0	우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0%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4.0	일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3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3.5							
구분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확보	점수																		
최우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5.0																		
우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0%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4.0																		
일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3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3.5																		
1.2.2	<table><tr><td colspan="2">교통약자용 좌석확보</td><td>점수</td></tr><tr><td colspan="2">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전체 좌석의 1/3이상 확보</td><td>5.0</td></tr></table>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에서의 이동거리가 짧은 승강구 주변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용 좌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노란색과 같이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좌석 커버를 이용할 수 있음	교통약자용 좌석확보		점수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전체 좌석의 1/3이상 확보		5.0	5												
교통약자용 좌석확보		점수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전체 좌석의 1/3이상 확보		5.0																		
1.2.3	<table><tr><td colspan="2">안내판 설치</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과 좌석커버 부착</td><td>6.0</td></tr><tr><td>우수</td><td>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 부착</td><td>4.8</td></tr><tr><td>일반</td><td>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td><td>4.2</td></tr></table>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에서의 이동거리가 짧은 승강구 주변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용 좌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노란색과 같이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좌석 커버를 이용할 수 있음	안내판 설치		점수	최우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과 좌석커버 부착	6.0	우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 부착	4.8	일반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4.2	6						
안내판 설치		점수																		
최우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과 좌석커버 부착	6.0																		
우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 부착	4.8																		
일반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4.2																		
1.2.4	<table><tr><td colspan="2">정차신호 스위치</td><td>점수</td></tr><tr><td colspan="2">좌석 옆에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정차신호 스위치 부착</td><td>6.0</td></tr></table> - 버스의 경우에는 운행 시 차량 흔들림이 심해 교통약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가 정류소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신호 장치를 작동할 때에는 차량내부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교통약자용 좌석근처에 설치하여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정차신호 스위치		점수	좌석 옆에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정차신호 스위치 부착		6.0	6												
정차신호 스위치		점수																		
좌석 옆에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정차신호 스위치 부착		6.0																		
1.2.5	<table><tr><td colspan="2">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및 접이식 좌석 설치</td><td>6.0</td></tr><tr><td>우수</td><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설치</td><td>4.8</td></tr><tr><td>일반</td><td>길이1.3m×폭0.75m이상</td><td>4.2</td></tr></table> -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이상, 폭 0.75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휠체어 사용자용 전용공간이 확보된 버스차량의 경우, 유모차나 일반인을 위하여 휠체어 사용자용 전용공간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할 수 있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및 접이식 좌석 설치	6.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설치	4.8	일반	길이1.3m×폭0.75m이상	4.2	6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및 접이식 좌석 설치	6.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설치	4.8																		
일반	길이1.3m×폭0.75m이상	4.2																		
1.2.6	<table><tr><td colspan="2">수직손잡이</td><td>점수</td></tr><tr><td colspan="2">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설치</td><td></td></tr><tr><td>구분</td><td>수직손잡이 설치방법</td><td>점수</td></tr><tr><td>최우수</td><td>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따뜻한 재질로 마감된 손잡이 설치</td><td>6.0</td></tr><tr><td>우수</td><td>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td><td>4.8</td></tr></table> •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규격	수직손잡이		점수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설치			구분	수직손잡이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따뜻한 재질로 마감된 손잡이 설치	6.0	우수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4.8	12			
수직손잡이		점수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설치																				
구분	수직손잡이 설치방법	점수																		
최우수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따뜻한 재질로 마감된 손잡이 설치	6.0																		
우수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4.8																		

1.3 정보 설비		<table><tr><td>구분</td><td>수직손잡이 설치 여부</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승강구에 수직손잡이 설치</td><td>6.0</td></tr></table>	구분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점수	최우 수	승강구에 수직손잡이 설치	6.0											
	구분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점수																
	최우 수	승강구에 수직손잡이 설치	6.0																
	1.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table><tr><td>구분</td><td>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멀리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조명설비가 추가된 접근 가능 표시 부착</td><td>9.0</td></tr><tr><td>우 수</td><td>차량전면 우측의 위쪽, 측면은 출입문 옆에 접근 가능 표시 부착</td><td>7.2</td></tr><tr><td>일 반</td><td>휠체어탑승이 가능한 버스임을 안내하는 접근 가능 표시 부착</td><td>6.3</td></tr></table>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구분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점수	최우 수	멀리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조명설비가 추가된 접근 가능 표시 부착	9.0	우 수	차량전면 우측의 위쪽, 측면은 출입문 옆에 접근 가능 표시 부착	7.2	일 반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버스임을 안내하는 접근 가능 표시 부착	6.3	9					
	구분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점수																
	최우 수	멀리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조명설비가 추가된 접근 가능 표시 부착	9.0																
	우 수	차량전면 우측의 위쪽, 측면은 출입문 옆에 접근 가능 표시 부착	7.2																
	일 반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버스임을 안내하는 접근 가능 표시 부착	6.3																
	1.3.2 자동안내방송시설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table><tr><td>음량과 음색</td><td>점수</td></tr><tr><td>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문자서비스 <table><tr><td>문자서비스</td><td>점수</td></tr><tr><td>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td><td>3.0</td></tr></table>	음량과 음색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6										
음량과 음색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1.3.3 전자문자안내판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설치 위치 <table><tr><td>설치 위치</td><td>점수</td></tr><tr><td>버스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table><tr><td>식별</td><td>점수</td></tr><tr><td>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서비스 <table><tr><td>문자서비스</td><td>점수</td></tr><tr><td>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td><td>3.0</td></tr></table>	설치 위치	점수	버스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식별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9						
설치 위치	점수																		
버스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식별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1.3.4 행선지 표시																			
• 세부항목 - 행선지 표시의 설치 위치 <table><tr><td>설치 위치</td><td>점수</td></tr><tr><td>버스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table><tr><td>소재</td><td>점수</td></tr><tr><td>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td><td>3.0</td></tr></table>	설치 위치	점수	버스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소재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6										
설치 위치	점수																		
버스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소재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소 계			100	0	0														
2. 철도	2.1 승강구	2.1.1 승강구 형태																	
		<table><tr><td>구분</td><td>승강구 형태</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차량에 리프트 장착 및 안내인 도움</td><td>10.0</td></tr><tr><td>우 수</td><td>차량에 리프트 장착</td><td>8.0</td></tr><tr><td>일 반</td><td>이동식 간이 리프트 비치</td><td>7.0</td></tr></table> - 휠체어 승강설비는 차량에 직접 리프트를 장착한 경우와 이동식 간이 리프트를 승강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구분	승강구 형태	점수	최우 수	차량에 리프트 장착 및 안내인 도움	10.0	우 수	차량에 리프트 장착	8.0	일 반	이동식 간이 리프트 비치	7.0	10				
구분	승강구 형태	점수																	
최우 수	차량에 리프트 장착 및 안내인 도움	10.0																	
우 수	차량에 리프트 장착	8.0																	
일 반	이동식 간이 리프트 비치	7.0																	

2.2. 차내 설비

2.2.1 전용좌석 확보

• 세부항목 - 전용좌석 확보(일반철도)

구분	전용좌석 확보	점수
최우 수	6개	6.0
우 수	5개	4.8
일 반	4개	4.2

• 세부항목 - 전용좌석 확보(고속철도)

구분	전용좌석 확보	점수
최우 수	수동휠체어 5개, 전동휠체어 4개	6.0
우 수	수동휠체어 4개, 전동휠체어 3개	4.8
일 반	수동휠체어 3개, 전동휠체어 2개	4.2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지정된 전용의 좌석이고, 휠체어 전용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휠체어에 탑승한 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임

2.2.2 휠체어 보관함 설치

구분	휠체어 보관함 설치	점수
최우 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 보관함 설치	6.0
우 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보관함 설치	4.8

2.2.3 접근 가능한 전용좌석의 설치 위치

구분	전용좌석의 설치 위치	점수
최우 수	승·하차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출입문 가까이에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 판 부착	6.0
우 수	승·하차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출입문 가까이에 지정	4.8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은 승 하차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의 출입문 가까이에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함

2.2.4 전용좌석의 크기

구분	전용좌석의 크기	점수
최우 수	전용공간은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이를 고정하는 고정설비를 갖춘 것	6.0
우 수	전용공간은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4.8

- 휠체어 전용공간은 다른 철도차량 이용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길이 1.2m이상, 폭 0.7m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휠체어가 철도차량의 흔들림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휠체어를 고정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2.2.5 안내판 부착

구분	안내판 부착	점수
최우 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 표지판 부착	6.0
우 수	좌석 옆에 안내 판 부착	4.8

2.2.6 통로의 유효폭

• 세부항목 - 객차 내 유효폭

구분	객차 내 유효폭	점수
최우 수	1.0m이상	4.0
우 수	0.9m이상	3.2
일 반	0.8m이상	2.8

-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객차는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구부터 좌석까지, 좌석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까지, 좌석에서 휠체어 전용공간까지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함

• 세부항목 -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 폭

	<table><tr><td>구분</td><td>승강구 폭</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1.1m이상</td><td>4.0</td></tr><tr><td>우 수</td><td>1.0m이상</td><td>3.2</td></tr><tr><td>일 반</td><td>0.9m이상</td><td>2.8</td></tr></table>	구분	승강구 폭	점수	최우 수	1.1m이상	4.0	우 수	1.0m이상	3.2	일 반	0.9m이상	2.8				
구분	승강구 폭	점수															
최우 수	1.1m이상	4.0															
우 수	1.0m이상	3.2															
일 반	0.9m이상	2.8															
	2.2.7 바닥 마감																
	<table><tr><td>구분</td><td>바닥 마감</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 전혀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td><td>2.0</td></tr><tr><td>우 수</td><td>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td><td>1.6</td></tr></table> - 승강구의 바닥면은 탑승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승강구 바닥재의 마찰력은 우천(雨天)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 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 전혀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2.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2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 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 전혀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2.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2.2.8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																
	<table><tr><td>구분</td><td>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위치</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가까운 곳에 전용화장실 설치</td><td>5.0</td></tr><tr><td>우 수</td><td>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설치</td><td>4.0</td></tr></table>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구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위치	점수	최우 수	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가까운 곳에 전용화장실 설치	5.0	우 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설치	4.0	5						
구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위치	점수															
최우 수	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가까운 곳에 전용화장실 설치	5.0															
우 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설치	4.0															
	2.2.9 대변기의 설치																
	<table><tr><td>대변기 설치</td><td>점수</td></tr><tr><td>1개</td><td>5.0</td></tr></table> -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의 칸막이 유효바닥면적 폭 1.4m, 길이 1.8m는 휠체어사용자가 대변기에 전면으로 접근하여 대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공간임 - 일반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변기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활동공간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변기 설치	점수	1개	5.0	5											
대변기 설치	점수																
1개	5.0																
	2.2.10 문의 형태																
	<table><tr><td>문의 형태</td><td>점수</td></tr><tr><td>미닫이문</td><td>5.0</td></tr></table> -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배려하여 문의 형태 조정과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하도록 함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음	문의 형태	점수	미닫이문	5.0	5											
문의 형태	점수																
미닫이문	5.0																
	2.2.11 점자표기																
	<table><tr><td>점자표기</td><td>점수</td></tr><tr><td>점자표지판 부착</td><td>5.0</td></tr></table>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철도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점자를 통해 화장실 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점자표기	점수	점자표지판 부착	5.0	5											
점자표기	점수																
점자표지판 부착	5.0																
2.3 정보 설비	2.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table><tr><td>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td><td>점수</td></tr><tr><td>그림표지 부착</td><td>9.0</td></tr></table> - 승강장에서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은 휠체어사용자의 착석과 휠체어 보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점수	그림표지 부착	9.0	9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점수																
그림표지 부착	9.0																
	2.3.2 자동안내방송시설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table><tr><td>음량과 음색</td><td>점수</td></tr><tr><td>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문자서비스	음량과 음색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6											
음량과 음색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table><tr><td colspan="2">문자서비스</td><td>점수</td></tr><tr><td colspan="2">한글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td><td>3.0</td></tr></table>	문자서비스		점수	한글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글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2.3.3 전자문자안내판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위치 <table><tr><td>위치</td><td>점수</td></tr><tr><td>버스안의 전면(前面) 뒷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table><tr><td>식별</td><td>점수</td></tr><tr><td>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서비스 <table><tr><td>문자서비스</td><td>점수</td></tr><tr><td>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td><td>3.0</td></tr></table>	위치	점수	버스안의 전면(前面) 뒷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식별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9											
	위치	점수																								
	버스안의 전면(前面) 뒷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식별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2.3.4 행선지 표시 - 세부항목 - 행선지 표시 설치 위치 <table><tr><td>설치 위치</td><td>점수</td></tr><tr><td>철도안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td><td>3.0</td></tr></table> - 세부항목 -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table><tr><td>소재</td><td>점수</td></tr><tr><td>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td><td>3.0</td></tr></table>	설치 위치	점수	철도안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소재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6																
설치 위치	점수																									
철도안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소재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소 계			100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3.1 승강구	3.1.1 출입구 통로 <table><tr><td>구분</td><td>출입구 유효폭</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1.2m 확보</td><td>20.0</td></tr><tr><td>우 수</td><td>1.0m 확보</td><td>16.0</td></tr><tr><td>일 반</td><td>0.8m 확보</td><td>14.0</td></tr></table>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내부 폭원은 휠체어 사용자가 차량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므로 차량의 출입구에 특별한 설치물이 없는 한 승강장에서 승강구, 휠체어사용자용 전용공간까지 자력(自力)으로 이동이 가능함 - 따라서 출입구의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최소폭인 0.8m의 유효폭을 확보하여 휠체어사용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및 고령자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출입구 유효폭	점수	최우 수	1.2m 확보	20.0	우 수	1.0m 확보	16.0	일 반	0.8m 확보	14.0	20											
	구분	출입구 유효폭	점수																							
	최우 수	1.2m 확보	20.0																							
우 수	1.0m 확보	16.0																								
일 반	0.8m 확보	14.0																								
3.2 차내설비	3.2.1 교통약자용 좌석 - 세부항목 - 교통약자용 좌석 확보 <table><tr><td>구분</td><td>교통약자용 좌석 확보</td><td>점수</td></tr><tr><td>최우 수</td><td>1개 차량당 16석</td><td>10.0</td></tr><tr><td>우 수</td><td>1개 차량당 14석</td><td>8.0</td></tr><tr><td>일 반</td><td>1개 차량당 12석</td><td>7.0</td></tr></table> - 세부항목 - 교통약자용 좌석의 안내판 부착 <table><tr><td>안내판 부착</td><td>점수</td></tr><tr><td>장애인 및 노약자석 우선표시</td><td>10.0</td></tr></table> - 세부항목 - 교통약자용 좌석의 전용공간확보 <table><tr><td>전용공간확보</td><td>점수</td></tr><tr><td>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td><td>10.0</td></tr></table>	구분	교통약자용 좌석 확보	점수	최우 수	1개 차량당 16석	10.0	우 수	1개 차량당 14석	8.0	일 반	1개 차량당 12석	7.0	안내판 부착	점수	장애인 및 노약자석 우선표시	10.0	전용공간확보	점수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10.0	30				
구분	교통약자용 좌석 확보	점수																								
최우 수	1개 차량당 16석	10.0																								
우 수	1개 차량당 14석	8.0																								
일 반	1개 차량당 12석	7.0																								
안내판 부착	점수																									
장애인 및 노약자석 우선표시	10.0																									
전용공간확보	점수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10.0																									
	3.2.2 수직손잡이 설치		20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설치 <table><tr><td>수직손잡이 설치</td><td>점수</td></tr><tr><td>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td><td>10.0</td></tr></table>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지름 <table><tr><td>수직손잡이 지름</td><td>점수</td></tr><tr><td>3cm내 외</td><td>10.0</td></tr></table> - 수직손잡이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차량 내 입석(立席)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차량 내 이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어린이의 손 크기를 고려하여 3cm내외로 함	수직손잡이 설치	점수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	10.0	수직손잡이 지름	점수	3cm내 외	10.0																													
수직손잡이 설치	점수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	10.0																																					
수직손잡이 지름	점수																																					
3cm내 외	10.0																																					
3.3 정보 설비	3.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table><tr><td>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td><td>점수</td></tr><tr><td>그림표지 부착</td><td>9.0</td></tr></table> -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전용공간이 확보된 객차의 스크린도어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를 할 수 있음 3.3.2 자동안내방송시설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table><tr><td>음량과 음색</td><td>점수</td></tr><tr><td>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td><td>3.0</td></tr></table>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문자서비스 <table><tr><td>문자서비스</td><td>점수</td></tr><tr><td>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td><td>3.0</td></tr></table> 3.3.3 전자문자안내판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설치 <table><tr><td>설치</td><td>점수</td></tr><tr><td>철도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td><td>3.0</td></tr></table>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table><tr><td>식별</td><td>점수</td></tr><tr><td>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td><td>3.0</td></tr></table>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서비스 <table><tr><td>문자서비스</td><td>점수</td></tr><tr><td>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td><td>3.0</td></tr></table> 3.3.4 행선지 표시 세부항목 - 행선지 표시의 설치 위치 <table><tr><td>설치 위치</td><td>점수</td></tr><tr><td>버스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td><td>3.0</td></tr></table> 세부항목 -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table><tr><td>소재</td><td>점수</td></tr><tr><td>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td><td>3.0</td></tr></table>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점수	그림표지 부착	9.0	음량과 음색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설치	점수	철도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식별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설치 위치	점수	버스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소재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9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점수																																					
그림표지 부착	9.0																																					
음량과 음색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설치	점수																																					
철도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식별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문자서비스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설치 위치	점수																																					
버스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소재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면적	m ²	심의일자	

인증심의 결과

결정 등급	자체평가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대상	교통수단
	인증심사단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의결결과	
	인증심의위원회 점수	점 ÷ 배점	점 ×100=	%	등급		

인증심의위원회 명부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인증 심의 등급부여 기준
				가	부	조건부	
(위원장)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 가결 - 원안통과 ○ 조건부 의결 - 경미한사항 ○ 조건부 보고 - 주요한사항 (답변재검토) ○ 재심의 - 대면 재검토 ○ 제외 - 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받기어려운시설 ○ 부결- 인증기준 부적합
1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2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3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4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최종 결과	찬성 명, 반대 명으로 가결 () · 불허 ()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 호,
-------	------------------------------	------------	------

인증기관 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 결과서(예비인증/본인증/인증연장)

인증 심의위원회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주(세부)용도		심사일자	
소재지		연면적	m ²	심의일자	
주요 심의 결과				인증대상	교통수단

인증 심의위원회 서명

소 속	성 명	의 결 서 명		
		가	부	조건부
		가결/제외	부결/재심의	의결/보고

인증기관 로고

※ 심사단 의견에 따른 답변서 양식은 아래 답변서 양식과 PPT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자체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 예비인증 심사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BF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수단 심의결과서

범 주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	심사 결과	심사결과	반영 여부	심사답변	심의결과	최종조치결과	비고
1. 버 스	1.1 승강구	1.1.1 휠체어 승강설비	15							
		1.1.2 승강구 유효폭	5							
		1.1.3 승강구 바닥 마감	5							
		1.1.4 승강구 계단 디딤판	5							
	1.2 차내 설비	1.2.1 교통약자가 사용가능 한 공간 확보	5							
		1.2.2 교통약자용 좌석확보	5							
		1.2.3 안내판 설치	6							
		1.2.4 정차신호 스위치	6							
		1.2.5 휠체어 사용자를 위 한 공간	6							
		1.2.6 수직손잡이	12							
	1.3 정보 설비	1.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 시	9							
		1.3.2 자동안내 방송시설	6							
		1.3.3 전자문자 안내판	9							
		1.3.4 행선지 표시	6							
소 계		100	0	0						
2. 철 도	2.1 승강구	2.1.1 승강구 형태	10							
	2.2 차내 설비	2.2.1 전용좌석 확보	6							
		2.2.2 휠체어 보관함 설치	6							
		2.2.3 접근 가능한 전용좌석 의 설치 위치	6							
		2.2.4 전용좌석의 크기	6							
		2.2.5 안내판 부착	6							
		2.2.6 통로의 유효폭	8							
		2.2.7 바닥 마감	2							
		2.2.8 장애인 등이 이용 가 능한 화장실의 위치	5							
		2.2.9 대변기의 설치	5							
		2.2.10 문의 형태	5							
		2.2.11 점자표기	5							
	2.3 정보 설비	2.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 시	9							
		2.3.2 자동안내 방송시설	6							
		2.3.3 전자문자 안내판	3							
			3							

			3							
		2.3.4 행선지 표시	3							
			3							
			3							
소계			100	0	0					
3.도 시 철 도 및 광 역 전 철	3.1 승강구	3.1.1 출입구 통로	20							
	3.2 차내 설비	3.2.1 교통약자용 좌석	10							
			10							
			10							
		3.2.2 수직손잡이 설치	10							
			10							
	3.3 정보 설비	3.3.1 장애인 접근 가능표시	9							
		3.3.2 자동안내 방송시설	3							
			3							
		3.3.3 전자문자 안내판	3							
			3							
			3							
		3.3.4 행선지 표시	3							
			3							
소계			100	0	0					